

국가회계 재정통계



ISSN 2635-7119

2024년 겨울호
Vol. 41



국가회계 동향

2024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재정통계 동향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세미나

「제5회 KIPF 발행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CONTENTS

2024년 겨울호

Vol. 41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41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4년 겨울호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561(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2024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35 IPSAS SRS ED 1 - '기후 관련 공시' 발표
- 37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 42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48 202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49 2024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51 2024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52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재정통계 동향

- 54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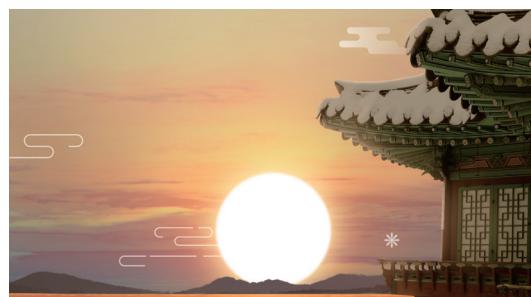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64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68 2024 XBRL Conference(2024 Data Amplified)
참석 결과
- 80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8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 83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 86 「제5회 KIPF 발행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공지사항

- 107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화제
자보전시회
○○



국가회계 동향

- 2024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IPSAS SRS ED 1 - '기후 관련 공시' 발표
-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01 2024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2024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9월 회의에서 IPSAS 개선 과제 중 ‘천연자원’, ‘천연자원 - IFRS 6, IFRIC 20 대응’,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최신 쟁점을 다루었다. 아래는 각 프로젝트별 세부 안건과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젝트	안건
천연자원	안건 6: ED 92, ‘유형의 천연자원’(ED 92, Tangible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 IFRS 6, IFRIC 20 대응	<p>안건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Stripping Costs in the Production Phase of a Mine (Amendments to IPSAS 12)) - IPSAS X,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재무제표 표시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38>

1)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 공공부문에서 천연자원은 많은 국가에서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부와 유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현재 IPSAS 문헌에서는 '천연자원'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목표) 유형의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목표는 천연자원의 인식, 측정 및 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문보고서와 하나 이상의 공개초안을 개발하기 위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0년 3월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승인• 천연자원 프로젝트 범위 지정
2021년 6월	C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보고서의 광범위한 개발• 1단계: 하충토자원, 생물자원, 물
2022년 3월	C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보고서 1단계 승인
2022년 12월	CP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
2023년 3월	CP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보고서 답변 검토(49건)• 일반적인 설명, 인식, 보고, IFRS 6 및 IFRIC 20 대응
2023년 6월	ED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초안 개발• 목적, 범위, 정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2023년 9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상황에서의 인식 및 측정• 적용지침(AG) 수정
2023년 12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규정 문헌 - 결론도출근거(BC) 수정
2024년 3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규정 문헌 - 실무적용지침(IG) 및 예시사례(E) 수정
2024년 6월	ED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초안의 승인까지 진행될 프로젝트 계획 논의• 규정문헌 및 문단제정근거 수정
2024년 9월	ED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초안의 검토 및 승인•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한 페이지별 검토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Edwin Ng)

- 공개초안의 검토 및 승인
- 비규정 문헌인 실무적용지침(IG) 및 예시사례(IE)에 대한 페이지별 검토 수행

표 1 천연자원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ED 92, 유형의 천연자원 초안에 대한 개정사항	

[배경]

2024년 7월 체크인 회의에서 IPSASB는 ED 92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별 검토를 수행했으며 Staff에게 ED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결사항(decisions)과 지시사항(instruction)을 제공하였다.

[분석]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한 정의

- “유형의 천연자원은 (a)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b) 용역잠재력 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 또는 둘 다를 창출하는 항목이다.” 이 변경사항은 정의가 용역잠재력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언급해야 한다는 7월의 IPSASB 의결사항을 반영한다. IPSASB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의 천연자원이 ED 92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사항은 정의가 아닌 ED의 범위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다.
- 또한 Staff는 정의가 유형의 항목을 지칭해야 하는지 묻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예: “유형의 천연자원은… 등과 같은 유형의 항목이다”). Staff는 ‘유형의’라는 단어가 이미 안건 제목에 포함되어 있고 ED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므로 정의에 추가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해당 제안은 업데이트된 정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시사항 1: 결론도출근거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전개할 것

- Staff는 IPSASB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제목을 추가하고 문단BC5~BC6을 수정했으며, 이를 통해 유형의 천연자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지시사항 2: ED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

- 지시된 대로 Staff는 ED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ED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했다.

지시사항 3: 섹션별 검토에서 제기된 기타 변경 사항

- ED의 43항은 유형의 천연자원이 해당 자원을 보유하는 기업의 주요 목적에 따라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각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이 주요 목적이 설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 위원 및 기술 고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편집 및 서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개정은 ED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나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타 변경사항

- 위의 변경사항 외에도 제안된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해 BC41 단락이 추가되었다.

표 1 의 계속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실무적용지침(IG) 및 예시사례(IE)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6월 IPSASB 회의에서 IPSASB는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로 구성된 ED 92의 비규정 문헌에 대한 개정 개요를 검토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IPSASB는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에 대한 제안된 주제에 동의하고 태스크포스에 개발을 위임했다.Staff는 또한 2024년 6월 회의에서 제안된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에 대해 IPSASB 자문위원회(CAG)와 논의했다.IPSASB의 의결 및 지시 사항과 CAG의 조언에 따라 Staff는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의 초안을 작성했다.
[분석]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6월 의결 및 지시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용지침이 ED 92, 유형의 천연자원에 포함될 것이 제안되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A.1: 유형의 천연자원이 [초안] IPSAS [X] 또는 다른 IPSAS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문단IG1~IG3). 이 IG는 ED의 문단3~4에 있는 범위 지침을 살펴보고, 각 실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B.1: 천연자원의 식별(문단IG4). 이 IG는 실체가 관할권 내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을 식별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제공함C.1: 통제의 결정(문단IG5~IG12). 이 IG는 통제 지표와 그것들이 물이나 생물자원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천연자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C.2: 지하자원 인식의 어려움(문단IG13). 이 항은 존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추출 광물 또는 석유 매장량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함C.3: 회계 단위(문단IG14~IG16). 이 항에서는 적절한 회계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범위,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잠재적인 연쇄 효과를 논의C.4: 보존(문단IG17~IG20). 이 IG는 보존이 다른 IPSAS 범위 내의 유형자산이 일반적으로 이용될 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유형의 천연자원이 주로 보존을 목적으로 보유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요소를 제공C.5: 유형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발생한 후속 지출(문단IG21). 이 항에서는 후속적인 보존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ED 문단8에 명시된 회계처리와 동일하며 유형자산과 관련된 후속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유사하다고 설명C.6: 주요 용도 변경(문단IG22~IG24). 이 IG는 '재야생화' 개념을 설명하고 토지 용도 변경 시의 회계 절차를 살핌D.1: 현재 가치 결정(문단IG25~IG27). 이 IG는 유형의 천연자원의 현재 운영가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D.2: 현재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음(문단IG28~IG29). 이 IG는 유형자원의 현재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봄E.1: 공시의 그룹화(문단IG30~IG32). 이 IG는 IPSAS가 ED 92의 범위 내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의 공시를 다른 IPSAS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그룹화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공시를 그룹화하고자 할 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함

표 1 의 계속**■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제안된 예시사례도 추가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1: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단IE3~IE7). 이 예는 서로 다른 주요 용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이 서로 다른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예 2: 자연 공간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문단IE8~IE10). 이 예는 RPG 3의 예 3(서비스 성능 정보 보고)을 기반으로 하며, 녹색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잠재적 회계처리를 설명함 예 3: 사용하지 않는 공공소유 토지(문단IE12~15). 이 예는 실체가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보존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줌 예 4: 수정된 소급 전환법과 완전 소급 전환법 간의 차이점(문단IE17~IE28). 이 예는 ED 92의 문단61~63에 제안된 전환 지침을 살펴봄 IG와 IE는 비규정 문헌이기 때문에 Staff는 2024년 9월 회의에서 예외적으로 IPSASB와 이러한 항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6월 IPSASB 회의에서 논의된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

ED 92, 유형의 천연자원 초안의 승인**[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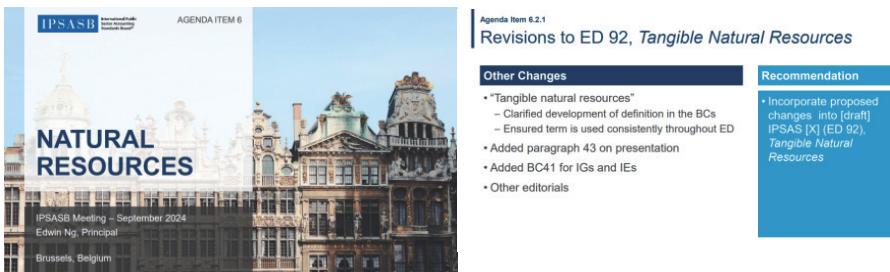
- ED 92의 승인과 ED 92를 120일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분석]**적법절차**

- 6.2.3
- 천연자원 프로젝트는 2020년 3월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및 개요의 공식 승인으로 시작되었다. IPSASB는 2022년 5월 9일 천연자원 자문보고서(CP)를 개발하고 발표 했다. CP에 대한 의견 수집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에 마감되었다.
 - IPSASB는 2023년 3월에 CP에 대한 답변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고 Staff들에게 진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 IPSASB CAG는 CP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와 IPSASB가 2023년 6월, 2023년 12월, 2024년 6월 회의에서 제기한 다른 이슈를 논의했다. CAG는 IPSASB가 분석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과 조언을 제공했다.
 - 천연자원 태스크포스는 여러 차례의 대면 및 화상 회의를 가졌고, 전자 메일을 통해 소통 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했다.
 - 위원들의 피드백과 IPSASB의 지시에 따른 ED 92의 범위 및 천연자원의 정의
 - 위원 및 IPSASB의 피드백을 고려한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
 - ED 92의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 개발

공개 기간

- Staff는 IPSASB의 적법 절차와 작업기간을 고려해 120일의 일반 공개 기간을 권장한다.



2) 천연자원 – IFRS 및 IFRIC 대응 (Natural Resources – 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통해 IPSASB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추출에 관여하는 공공부문의 실체에 발행될 특정 지침의 필요성 확인
- 현재 탐사 및 평가 지출이나 박토원가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부문 회계 지침은 존재하지 않음
- 잠재적으로 다양한 회계 관행을 다루기 위해, IPSASB는 향상된 책임성과 비교 목적을 위해 이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목표)

- IPSAS를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에 맞춰 개발*

* 탐사평가 지출을 자본화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된 탐사평가 자산에 대한 측정,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이 포함됨

- IPSAS 지침서를 IFRIC 20,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Strippling Costs in the Production Phase of a Mine)에 맞춰 개정*

* 노천광산의 폐기물 제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러한 폐기물 제거 활동을 'Strippling'이라고 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0년 3월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승인 • 천연자원 프로젝트 범위 지정
2021년 6월	C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보고서의 광범위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하충도자원, 생물자원, 물
2022년 3월	C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보고서 1단계 승인
2022년 12월	CP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
2023년 3월	CP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보고서 답변 검토(4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설명, 인식, 보고, IFRS 6 및 IFRIC 20 대응
2023년 9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6 및 IFRIC 20 대응 필요성 •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 반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부록
2023년 12월	ED	이슈 논의 &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 승인
2024년 3월	ED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5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
2024년 6월	ED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에 대한 답변 의견 검토
2024년 9월	ED, IP	이슈 논의 & 최종 발표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답변 분석 및 이슈 논의 • 최종 발표문 페이지별 검토
2024년 12월	IP	최종 발표문 승인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Christoph Braxton)

-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ED 86 및 ED 87)와 관련하여 최종 발표문의 검토 및 승인
- ED 86(IFRS 6 대응)과 관련하여 ED 86에 대한 답변 분석, IFRS 6의 공공부문 개정안과 제한적 일치, 결론도출근거
- ED 87(IFRIC 20 대응)과 관련하여 ED 87에 대한 답변 분석, IFRIC 20의 공공부문 개정안과 제한적 일치, IPSAS 12 부록 지침, 결론도출근거

표 2 천연자원 – IFRS 및 IFRIC 대응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7: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안건 항목	내용
ED 86 및 ED 87: 답변 검토	
[목적] IPSASB에 공개조안(ED) 8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D 87,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대한 답변에 관한 상위 수준의 검토를 제공한다(IPSAS 12에 대한 개정사항).	
[배경] • IPSASB는 2024년 1월 31일에 ED 86과 ED 87을 발표했다. • ED 86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안한다. 제안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IFRS 6(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요구사항과 대부분 일치시켰다. • ED 87은 IPSAS 12, 재고자산에 부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노천광산 채굴 작업 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며,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IFRIC 20(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지침과 일치시켰다. • 이 안건 항목은 IPSASB에 ED 86 및 ED 87의 답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제공한다.	
[분석] 7.2.1 • ED 86과 ED 87은 각각 28개의 답변을 회신받았다. 두 ED 모두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ED 86과 ED 87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 각 ED에 대한 답변 검토는 의견요청사항(SM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 (a) 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을 하지 않거나 ED 제안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D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b) 부분적 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에 동의하며 원칙은 수정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제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하였다. 각 제안들은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설명, 편집적인 부분 또는 지침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 비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ED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제안은 ED 제안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의 제안과 함께 고려된다. (d) 무응답: 응답자는 구체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 답변 분류의 일환으로, Staff는 답변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여 IPSASB가 각 ED 개발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개별 답변에서 제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답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 ED 86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안건 7.2.2 - ED 87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안건 7.2.3과 7.2.4 • 안건 7.3.1과 7.3.3에서는 ED 86과 ED 87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을 포함한다. - 지역, 기능 및 언어별로 접수된 답변 분석 - 답변자 조직 및 개인 목록 - 각 의견요청사항(SMC)에 대한 답변 요약	

표 2 의 계속

■ 안건 7: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안건 항목	내용
ED 86: 제한된 공공부문 개정안과 IFRS 6의 일치(SMC 1)	
<p>[권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장한다. <p>(a) IPSAS 31, 무형자산에 대한 수정을 위해 다른 IPSAS에 대한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한다.</p> <p>(b) 최종발표문의 결론도출근거(BC)를 수정하여 다음을 명확히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문단8의 일시적 적용 면제에 대한 내용 삭제 (ii) 상업적 채굴 작업에 대한 적용이며 용역제공 목적이 아님 (iii) 국가의 탐사권 발행 권한을 설명하는 데까지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음 <p>(c)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사항을 승인한다.</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86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되어 있다. 	
<p>의견요청사항 1: IPSASB는 ED 86에서 IFRS 6에 대응되는 기준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2~BC7 참조). 공공부문을 위한 IFRS 6에 대한 수정안이 용어 및 다른 IPSASB의 서식 및 일관성 수정에 국한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문단BC8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오.</p>	
<p>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안건은 최종 발표문에 대한 ED 86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룬다.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는 대다수의 응답자(24명, 86%)가 ED 86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3명(11%)의 응답자는 ED 86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1명(3%)의 응답자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ED 86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들은 최종발표문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Staff가 동의 또는 일부 동의한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부록 A.1, A.2)에 따라, Staff는 최종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86에서 생략된 IPSAS 31, 무형자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기 위해 다른 IPSAS에 대한 개정을 업데이트한다. 이 수정안은 IPSAS 45, 유형자산 수정안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IPSAS의 문구에서 이 최종발표문을 참조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국제 또는 국가회계 기준을 참조하지 마시오. (b) 상업적 성격의 탐사 및 평가 활동에 대한 적용과 '용역 제공', 즉 '용역 짐재력'과 관련된 공공부문에 국한되는 용어의 제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5 및 문단BC8을 업데이트하여 최종발표문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IPSASB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탐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IFRS 6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이 공공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관련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표 2 의 계속

■ 안건 7: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안건 항목	내용
	(c) IPSAS 3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일시적 적용면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IPSASB의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11을 업데이트한다. 이는 IFRS 6에 대한IASB의 결정과 일치한다. 응답자들은 IFRS 6이 여전히 IAS 8, 회계정책, 회계 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의 일부 원칙에 대한 '일시적 적용면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ASB가 면제를 영구화하기로 한 결정은 아직 공식 발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IFRS 6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ED 86에 공개된 IASB의 결정과 일치하도록 IPSASB가 내린 결정을 BC에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d) 최종발표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탐사권을 발행하는 국가의 권한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문단BC9 참조). 많은 응답자는 최종발표문의 범위에 혼란을 느꼈고, 그것이 탐사권 발행 권한에 대한 설명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BC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지침을 더 잘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7.2.2	•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한 Staff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면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비교성이 제한될 수 있다. (b) ED 86은 공공부문의 모든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c) 응답자의 관할권에 ED 86 제안을 적용하는 데는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 (d) 일부 탐사 및 평가 자산은 국가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 손상 지표는 ED 86 문단21의 지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f) 손상 지표는 통제 상실을 나타낼 수 있다. (g) 공공부문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GPFR)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적용 및 자산 정의에 관하여 불일치가 존재한다. (h) 탐사 및 평가 자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ED 87: 제한된 공공부문 개정안과 IFRIC 20의 일치(SMC 1)

[권장사항]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장한다.
 - (a) 박도 활동 자산에 대한 측정기준이 IPSAS 45 및 IPSAS 46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A14를 수정한다.
 - (b) 최종발표문(IPSAS 12 개정) 부록 A의 문단A항에 있는 인식 기준이 실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10을 수정한다.
 - (c)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사항을 승인한다.

7.2.3 [배경]

- ED 87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요청사항 1:

IPSASB는 ED 87에서 IFRIC 20에 대응되는 지침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문단BC10 참조). 공공부문을 위한 IFRIC 20에 대한 수정안이 용어 및 다른 IPSASB의 서식 및 일관성 수정에 국한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문단BC10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오.

- 이 안건은 최종발표문에 대한 ED 87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룬다.

표 2 의 계속

■ 안건 7: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안건 항목	내용
[분석]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C 1은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26명, 94%)가 SMC 1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단 한 명(6%)만이 SMC 1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명(6%)의 응답자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SMC 1의 답변에 대한 Staff의 검토를 바탕으로 Staff는 최종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IPSAS 12에 대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박토 활동 자산의 측정기준이 IPSAS 45 및 IPSAS 46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A14를 수정한다. ED 87은 IPSAS 45 및 IPSAS 46에서 측정기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재평가 금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b) 최종발표문(IPSAS 12 개정) 부록 A의 문단A9의 인식 기준에 용역잠재력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10을 업데이트 한다. 실체가 이러한 운영을 용역 제공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새로운 지침을 IFRS와 일치시킬 때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용역 잠재력'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IPSASB는 이 지침이 상업적 목적이 있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응답자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BC에 대한 추가 명확성을 원했다.</p>

ED 87: IPSAS 12의 부록 지침(SMC 2)

[권장사항]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장한다.
 - (a) IPSAS 12의 부록 A에 지침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발표문(IPSAS 12, 재고자산에 대한 개정)의 문단BC12를 개정한다.
 - (b)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사항을 승인한다.

[배경]

- 7.2.4 • ED 87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요청사항 2:

IPSASB는 ED 87에서 IPSAS 12, 재고자산에 대한 수정안으로 IFRIC 20에 대응되는 지침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문단BC11 참조).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문단BC11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오.

- 이 안건은 최종발표문에 대한 ED 87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룬다.

표 2 의 계속

■ 안건 7: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안건 항목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SMC 2는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27명, 97%)가 SMC 2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단 한 명(3%)만이 SMC 1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SMC 2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는 ED 87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직원이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 및 일부 동의를 요약하면, Staff은 최종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a) IPSASB가 IPSAS 12, 재고자산 부록 A에 지침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12를 업데이트한다. 2023년 12월 IPSASB의 논의에 따라 이 해석의 가장 적절한 위치로 지정되었다. 응답자들은 IPSASB가 IPSAS에 지침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한 Staff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a) 해석 지침은 IPSASB의 별도 발표문이어야 한다.(b) 응답자의 관할권에 ED 87 제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 응답자의 제안을 계속하지 않기로 제안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a) IPSAS 12의 부록. 응답자는 IPSASB가 ED 87 개발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 특히 해석 지침을 IPSAS 12의 부록으로 포함하는 것, 즉 IPSASB 기준 제정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발표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b) 관할권 차이. 한 관할권에서는 그 관할권에서 광물 채굴에 정부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지침을 간접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AGENDA ITEM 7

NATURAL RESOURCES - 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IPSASB Meeting – September 2024
Christoph Braxton, Principal
Brussels, Belgium

Agenda Item 7.2.2
ED 86: IFRS 6 Alignment with Limited Public Sector Amendments (SMC 1)

Analysis

- Strong support for the proposals with 86% that either **Agree** and **Partially Agree**
 - Suggestions to Enhance ED 86 proposals:
 - Accepted → Recommendations
 - Not accepted → No changes to proposals
- Respondents who **Disagree**:
 - Issues not public sector specific
 - Confusion regarding the scope of the ED
 - Issues already considered by the IPSASB

Recommendations

- Update the Amendments to Other IPSAS:
- Amend BC5, BC8, BC11, and BC9
- Approve revisions to [draft] Final Pronouncement

3)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IPSAS 개념체계 및 IAS 1 개정사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현행 IPSAS 1의 개정 소요 발생
 -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개념체계(2014년 발표) 간 정합성 검토 필요성 제기
 -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
- (목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¹⁾의 단계별 개정
 - (1단계) 신규 기준서 관련 자문보고서 발표 및 의견 수렴
 - (2단계) 신규 및 관련 기준서 개정사항 반영된 공개초안 발표
 - (3단계) 공개초안 의견 수렴 결과 반영한 최종안 발표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년 12월	PB	이슈 논의
2023년 6월	PB	이슈 논의
2023년 9월	PB	BP 승인
2023년 12월	CP	이슈 논의
2024년 3월	CP	이슈 논의
2024년 6월	CP	이슈 논의
2024년 9월	CP	이슈 논의
2024년 12월	CP	이슈 논의
2025년 3월	CP	이슈 논의
2025년 6월	CP	이슈 논의
2025년 9월	CP	CP 승인

1) 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이상 3개 기준서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nthony Heffernan)

-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개발 경과 보고
- 예시공개초안 개발(안)의 챕터별 쟁점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 규정(공정한 표시와 IPSAS 준수, 비교정보 등)
 - 통합 및 세분화(IFRS 18의 관련 신규 지침의 IED 반영 여부)
 - 재무상태표(유동/비유동 분류법의 일반 접근법 채택 여부 등)

표 3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자문보고서 및 예시공개초안의 개발		
9.2.1	<p>[목적] 자문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예시공개초안(IED)의 개발에 관한 업데이트를 IPSASB에 제공하는 것</p> <p>[프로젝트 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자문보고서와 예시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것임<ul style="list-style-type: none">(a) 자문보고서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최종 기준서를 개발하기 전에 현행 표시 관련 규정의 개선안과 관련된 IPSASB의 예비 견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제공함(b) IED는 자문보고서에 제시된 IPSASB의 예비 견해를 반영할 경우 IPSAS 1을 대체할 발간물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규정이 아닌 비권위적 예시에 해당함• 2024년 6월에 논의된 바와 같이, Staff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공개초안의 각 섹션 및 그에 상응하는 자문보고서의 장을 개발 중에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a) 단계1: IED의 각 섹션과 관련된 주요 이슈 심의(b) 단계2A: IED의 섹션(안) 개발(단계1에 대한 IPSASB 지시사항 토대)(c) 단계2B: (단계1 및 단계2A에 대한 의견 토대) 상응하는 자문보고서의 장 개발• Staff는 위 단계별 접근법을 적용하여 매 회의마다 IPSASB가 검토할 IED의 다른 섹션을 제출할 계획임. 가능한 한 종전 회의에서의 관련 이슈 논의에 이어 단계2A와 단계2B를 동일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앞당길 예정임• 이와 같이 할 경우 이번 회의에서 심의할 회의 안건에 자문보고서 초안 및 재정 상태표와 관련이 있는 IED 섹션이 포함될 것임• 부록A는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IED 및 CP의 각 섹션을 개발하는 계획을 개괄하면서 IPSASB가 검토 완료한 섹션들을 보여주고 있음• 가장 최근까지의 논의된 이슈가 반영된 자문보고서 및 IED 초안은 안건 9.3.1 및 안건 9.3.2에 제공되어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부록A - IED 및 자문보고서 개발의 단계별 접근법 개괄)

IED의 섹션	단계1: 이슈 논의	단계2A: IED(안) 검토	단계2B: CP(안) 검토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개시 챕터 리뷰 2023.12. (완)
적용범위	2023.12. (완)	2024. 6. (완)	
용어의 정의	2024. 3.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2024. 6.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전체 재무제표	2024. 4분기	2025. 1분기	
주요 재무제표 및 주석의 역할	2024. 6.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식별	2024. 4분기	2025.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 규정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2024. 3. (완)	안건 9.2.4	2025. 1분기 제2장. 일반 표시 원칙
9.2.1 계속실체	2024. 4분기	2025. 1분기	
발생기준 회계			
보고기간			
적시성			
표시의 계속성			
비교정보	2024. 3. (완)	안건 9.2.4	
회계정책의 변경, 재작성 또는 재분류		안건 9.2.4	
통합 및 세분화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	2024. 6. (TF/완)	안건 9.2.5	
상계	2024. 3. (완)		

표 3 의 계속**■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9.2.1	재무성과표		
	수익 및 비용의 분류		
	재무성과표에 배열되어야 하는 정보	2024. 4분기	2025. 1분기
	재무성과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에 배열되어야 하는 정보	2024. 4분기	2025.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배열되어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표시	2024. 6. (완)	
9.2.2	재무상태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2024. 6. (완)	안건 9.2.6
	순자산	2024. 3분기	
	순자산변동표		
9.2.2	순자산변동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2024. 4분기	2025. 1분기
	주석		
	구조		
	회계정책	주요 쟁점 없음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자본 관리		
	기정 성과측정치의 관리	2025. 1분기	
	기타 공시사항	주요 쟁점 없음	

자문보고서(안)

9.2.2

[의결사항]

안건 9.3.1에 제공되어 있는 자문보고서(안)의 제3장이 2024년 6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이슈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9.3.1은 최근까지 IPSASB가 심의한 사안이 통합된 자문보고서(안)을 보여주며, 자문보고서(안)에는 (표 1)에 표시한 섹션들이 포함됨 									
(표 1)									
	<table border="1"> <tr> <td>(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td><td>IPSASB는 초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td></tr> <tr> <td>(b) 제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td><td>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td></tr> <tr> <td>(c) 제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td><td>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td></tr> </table>	(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	IPSASB는 초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	(b) 제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	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	(c) 제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	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		
(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	IPSASB는 초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								
(b) 제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	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								
(c) 제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	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회의에서는 IPSASB의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을 Staff가 재무상태표에 관한 제3장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제3장은 주요 재무제표를 다루는 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IPSASB가 논의한 첫 번째 장임 중요 개정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제3장(안)은 다음의 취지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의 현행 규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 제공 - 현행 규정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 함으로써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함 (b) 위원회가 심의한 이슈에 대한 통찰력 부여 - 주요 사안 및 대안적 접근법에 대해 알려줌 (c) 위원회의 예비견해에 대한 설명 제공 -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특정 이슈가 이 프로젝트의 단계2에서 추가로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도록 독려함 제3장(안)은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표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핵심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음 									
(표 2)									
<table border="1"> <tr> <td>핵심 특징</td><td>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td></tr> <tr> <td>자산 및 부채의 분류</td><td>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td></tr> <tr> <td>특정 표시과 목의 배열</td><td>재무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 (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td></tr> <tr> <td>구조 및 소계의 표시</td><td>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제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재무상태표 본문에 특정 소계의 표시에 관한 정의 및 요구 </td></tr> </table>		핵심 특징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자산 및 부채의 분류	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	특정 표시과 목의 배열	재무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 (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구조 및 소계의 표시	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제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재무상태표 본문에 특정 소계의 표시에 관한 정의 및 요구
핵심 특징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자산 및 부채의 분류	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								
특정 표시과 목의 배열	재무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 (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구조 및 소계의 표시	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제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재무상태표 본문에 특정 소계의 표시에 관한 정의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주요 재무제표 각각을 다른 장을 구성할 때에도 상기와 동일한 핵심적 특징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장의 경우 IPSAS 1의 현행 규정을 보강하기 위한 제안사항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예시공개초안(안)의 개발</p> <p>[목적] 예시공개초안(IED)의 개발에 관한 업데이트를 내용을 IPSASB에 제공하는 것</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IPSASB는 자문보고서와 함께 예시 공개초안(IED)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IED는 자문보고서에 실린 IPSASB의 예비 견해를 반영할 경우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게 될 미래의 발간물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비권위적인 예시임IED는 IPSAS 개정안에 따른 일반적인 중요 표시 원칙 및 상세 규정이 조화를 이룰 것인지 를 보여줌. IED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IPSASB가 예상하고 있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 와 공시의 규정과의 차이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또한 IED는 IPSAS 1의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개정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2024년 6월에 IPSASB는 주로 IFRS 18을 토대로 하는 rules-of-the-road 접근법을 사용하여 IED(안)을 개발할 것이라는 취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 이 접근법은 IFRS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공공부문만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등한 지위의 IFRS의 규정, 구조, 문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로 한 IPSASB의 전략적 목표 및 프로젝트 개요와 일관된 것임비록 IED가 IFRS 18을 토대로 사용하나 IED가 공공부문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수정은 여전히 필요함 * 즉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이용자의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실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p>9.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IFRS 18 대비 수정사항의 식별 과정은 다음을 기초로 이루어짐<ul style="list-style-type: none">(a) IPSAS를 적용하는 데 여전히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IPSAS 1의 공공부문 특유 문단을 이월(b) IPSASB 개념체계와의 일관성 및 다른 IPSAS의 용어와의 내부 일관성 확보(c) 프로젝트 개요에서 식별한 공공부문 특유 이슈 적용(d) 정부재정통계(GFS)와의 불필요한 차이를 최대한 제거 <p>[IED(안) 개발 과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번 회의에서 Staff는 IED의 다음 섹션에 대한 IPSASB의 검토의견을 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a)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 - 안건 9.2.4(b) 통합 및 세분화 원칙 - 안건 9.2.5(c) 재무상태표 - 안건 9.2.6(a) 및 (b)의 일반 규정이 실질적인 수정 없이 IFRS 18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IPSAS 1의 현행 규정과도 일치함에도 이번 회의에서 다루게 된 이유는 (c)의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특정 규정을 심의할 때 필요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임 <p>[보충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음의 보충자료는 IPSASB의 심의 대상인 다음의 IED(안) 섹션을 검토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ul style="list-style-type: none">(a) 안건 9.3.2 - 현재까지 완성된 IED 섹션. 여기에는 과거 IPSASB의 검토결과 및 피드 백이 반영된 섹션들이 포함됨(b) 안건 9.3.3 - IFRS 18과의 유사성 비교표(c) 안건 9.3.4 - IPSAS 1과의 유사성 비교표

표 3 의 계속**■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예시공개초안 -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	
[의결사항]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을 다루는 IED 섹션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a) 핵심 문단 - 문단38~문단68(보충자료 중 pp. 21~29) (b) 적용지침 - 문단AG14~AG27(보충자료 중 pp. 39~43)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IED 섹션과 관련하여 Staff는 다음을 권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s-of-the-road 접근법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일반 규정을 다루는 문단들을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일치시키는 것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중에서 계속하여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공공부문 관련 문단을 옮겨 오는 것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은 주요 재무제표에 정보를 배열하는 것과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관한 일반 규정은 물론,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도 정하고 있음 발생기준 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계속실체(향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 발생기준 회계 중요한 정보(향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 보고번호 표시의 계속성 상계 비교정보 회계정책의 변경, 재작성 또는 재분류 IPSAS 1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된 것이며,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 영리부문에 걸쳐 사용 중인 회계기준과 전반적으로 일치함 이러한 일반 규정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타 실체의 재무제표와의 비교 혹은 동일 실체의 보고기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함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 관련 일반 규정과 관련된 특정 이슈는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Staff는 현행 표시 규정의 중대한 변경을 모색하지 않고 있음 IPSASB가 현재 시점에서 IED의 당해 섹션(안)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주요 재무제표 및 주석의 표시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점과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임 IPSAS 1의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세 번째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 현재 IASB가 발표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맞추어져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예시공개초안 -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	
IASB의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도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과 관련된 쟁점이나 우려가 식별된 바 없으므로, 기준서의 이 섹션은 IASB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 IFRS 18의 발표로 인해 IAS 1에서 가져온 재무제표의 일반 규정을 다루는 현행 규정 및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음	
[종전 이슈논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3월에 IPSASB는 추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식별하는 것을 돋기 위해 재무제표 일반 규정과 관련된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IPSASB는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여전히 적절한지 심의하였음. IPSAS 1의 현행 규정은 IFRS 18로 개정 없이 이전된 바 있는 IAS 1의 규정과 정합성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IPSASB는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관한 현행 규정이 IED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Staff에게 주문함. 복수의 위원들은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이 IPSAS 33, 발행주의 IPSAS의 최초 챕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해 질문에 대해 Staff는 다음 사항을 주지하였음<ul style="list-style-type: none">(a) IPSAS 1의 적용범위는 IPSAS를 준수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에게 적용되는 것임. 만약 특정 국가가 실제로 하여금 수정 버전 IPSAS(예: 자국 회계기준 기반)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자국 회계기준 제정자는 당해 자국 기준의 준수에 대해 설명하는 적절한 공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b) IPSAS 33은 완전 발행주의 IPSA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전환 중인 실체를 위한 지침에 해당함. 전환기간 동안 실체는 특정 경과규정 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IPSAS 33의 문단33은 최초 챕터자로 하여금 챕터된 경과규정이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를 주장하기 위한 최초 챕터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Staff는 IPSAS의 경우 완전한 준수를 전제로 개발되므로 IED에서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IPSAS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자국 회계기준 제정자가 적절한 공시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Staff 지침을 개발할 여지는 남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 정보의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거에 IPSASB는 특정 상황에서의 '세 번째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규정을 IPSAS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7년에 IASB는 IAS 1의 개정을 통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의 표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는데, 당해 규정은 IFRS 18에도 이전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해 개정사항은 IPSAS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IAS 1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a)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함(b)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순자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표 3 의 계속**■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예시공개초안 -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는 이러한 표시 규정을 공공부문에서도 적용하는 장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면서도, 이 규정이 영리부문 보고와의 일관성 유지를 근간 삼고 있는 IED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과 IFRS와의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만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는 동의함. 위원회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이 예비견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함 	
<p>- 상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IPSAS 1에서 상계에 대해 다루는 일반 표시 규정이 IED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바 있음. IPSAS 1의 현행 규정은 IFRS 18로 변경 없이 이전된 IAS 1의 규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위원회는 현행 규정과 차이를 두 만한 공공부문만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p>- 기타 쟁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의 이슈 외에 Staff는 다음의 일반 표시 규정 원칙의 경우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계속실체 개념 (b) 중요한 정보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록 구체적인 이슈를 제기한 이해관계자가 없었고 IFRS 18 발행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었으나, 일부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된 지침 및 공시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갖는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Staff는 당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향후 회의에서 위원회와 논의하기 전에 T/F와 논의할 예정임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계속실체 및 중요 정보 공시를 다루는 규정들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IFRS 18의 재무제표 일반 규정과 차이를 두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IPSAS 1의 현행 재무제표 일반 규정에 대한 중요한 변경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 개념체계의 원칙 및 개념과 일관성을 가짐 (b) 동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일반 규정과 관련된 공공부문 특유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음 IED에 포함될 재무제표 일반 규정의 개발안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Staff 의견은 안건 9.3.2에서 확인 가능함 	
<p>예시공개초안 -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p>	
<p>[의결사항]</p>	
<p>9.2.5 통합 및 세분화 원칙을 다루는 IED 섹션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p>	
<p>*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핵심 문단 - 문단69~문단74(보충자료 중 pp. 21~29) (b) 적용지침 - 문단AG28~AG40(보충자료 중 pp. 44~48)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Staff는 rules-of-the-road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IED에 통합하되, 개정 범위는 공공부문의 맥락에 맞추기 위한 용어 변경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무제표는 공유하는 특징에 따라 거래를 둑어 항목이라고 표현되는 잔액의 형태로 거래 및 기타 사건의 재무적 효과를 보여줌. 통합 원칙은 개별 거래 또는 항목을 더 큰 잔액에 합치는 것이며, 세분화는 통합된 잔액을 더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임. 실제는 재무제표 및 주석에 항목을 표시할 때 적절한 통합 및 세분화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IPSAS 1은 현재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정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통합은 실제의 주요 재무제표 본문에서 재무상태와 재무 성과,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세분화는 주요 재무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석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져야 함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4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a)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표시 항목은 해당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에 통합함(b) 해당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음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는 통합 및 세분화 원칙의 적용에 관한 보강된 지침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무제표 본문에 배열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돋기 위한 것이었음IASB는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통합되거나 세부화된 정보를 항상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보강된 지침을 개발하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IASB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주요 재무제표 내 일부 표시 항목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새로운 IFRS 18 지침은 실제에게 다음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a) 항목은 공유하는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되고 통합되며, 공유하지 않는 성격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야 함(b) 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이 각각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되거나 세분화되어야 함(c) 항목의 통합 및 세분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아야 함IFRS 18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통합된 정보는 그로 인한 결과 정보가 중요한 경우 반드시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가 주요 재무제표에 배열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주석에 공시되어야 함구체적으로 IFRS 18은 통합되는 항목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 항목으로 배열되는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또한 IFRS 18은 그룹으로 묶이는 항목과 '기타'로 묘사되는 항목의 명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도입함

표 3 의 계속**■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

예시공개초안 -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

- (a) IFRS 18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항목을 '기타'라고 배열하거나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실체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해 정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재고해야 할 수도 있음)
- (b) 만약 실체가 '기타'보다 더 유용한 제목을 찾을 수 없다면 실체는 통합된 항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해야 하며(예: 기타운영비용),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갖는 항목으로만 구성된다면 실체는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함(예: 중요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및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해설)

[분석]

- 9.2.5 • 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FRS 18의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IED(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a) 원칙적으로 당해 지침은 IPSAS의 현행 규정과 정합성을 가짐
 - (b) 지침은 IPSASB의 개념체계의 관련 개념에 부합함
 - (c) IASB가 이 지침을 도입한 것은 현행의 원칙을 더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돋기 위함인데, 이는 동 프로젝트의 목표를 전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Staff는 IPSAS 발간물 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 변경 이외에 IFRS 18의 규정과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 특유의 이유를 찾거나 공공부문 특유 지침을 만들 만한 필요성을 찾지 못했음
-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섹션에는 상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IPSASB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안건 9.3.2는 Staff의 추가 분석과 함께 통합 및 세분화를 다루는 IED의 규정 및 적용지침의 개발안을 제공하고 있음

예시공개초안 - 재무상태표의 표시**[의결사항]**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다루는 IED 섹션(안)이 위원회의 지난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a) 핵심 문단 - 문단12~문단128(보충자료 중 pp. 31~35)
- (b) 적용지침 - 문단AG102~AG124(보충자료 중 pp. 48~55)

9.2.6

[권고사항]

- Staff는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규정을 IPSAS 1의 현행 규정과 정합성을 갖고 있는 IFRS 18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배경]

• 재무상태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 재무제표 중 하나이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실체의 보고기간 말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대표되는 실체의 자원과 의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함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재무 상태표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우려사항은 식별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공공부문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다음 요인들의 조화를 위해 현행 규정의 보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 (a) IFRS와의 적절한 정합성 유지
 - (b) GFS와의 불필요한 차이 축소
 - (c) 공공부문 자국 회계기준 제정자의 관련성 있는 작업결과 고려
- (표 1)은 2024년 6월에 IPSASB가 심의한 주요 이슈와 IED의 관련 섹션과 자문보고서의 관련 장의 개발을 돋기 위해 제공된 시사사항을 요약한 것임

(표 1)

재무상태표	
주요 쟁점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자산 및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법이 IPSAS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IPSAS 1 및 IFRS 18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행 유동/비유동 분류법은 영리실체 및 공공부문실체 모두에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b)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재무관리(PFM)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c) 실체의 판단에 따라 주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대체적인 분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함 유동성 순서 표시 방법이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 허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안건 9.2.7) 자문보고서는 금융/비금융 접근법 등 IPSASB가 논의하였던 상이한 분류 방법 및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규정하는 예비견해의 조성 과정에 대해 다룰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IPSAS 1과 IFRS 18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에서 재무상태표가 표시되어야 할 구조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것 (b) IPSAS에서 재무상태표 본문의 상세 소계의 표시를 정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구조를 규정화하지는 않으나, 특정 표시 항목의 분류 및 배열에 관한 규정이 공공부문 사이에 일관성 있는 접근법 사용을 돋기 위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함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예시공개조안 - 재무상태표의 표시	
재무상태표	
주요 쟁점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9.2.6	<p>(b) IPSAS에는 규정이 아닌 비권위적 자료로서 주요 재무제표의 작성 예시에 관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재무제표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 될 수 있음</p> <p>(c) IPSAS는 추가적인 소제목 및 소계의 표시가 실체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우, 이들의 유연한 표시를 허용함</p> <p>(d) IPSAS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실제의 재무상태의 다른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중인 특정 소계 항목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유용하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이러한 지표가 각 국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p> <p>재무상태표의 본문에 서의 특정 표시 항목의 표시를 다루는 현 행 규정에 대한 보강 이 필요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특정 자산·부채 표시 항목의 목록이 (IPSAS 1의 현행 규정과 일치하는) IFRS 18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당해 목록이 배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표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체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우에 추가적인 표시 항목이 표시되어야 함 IPAS에서는 실체의 성격 및 거래를 바탕으로 표시 항목의 표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분석]

- Staff는 2024년 6월에 IPSASB가 내린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IED의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섹션(안)을 개발하였으며, 당해 섹션의 요약 결과와 Staff의 고려사항의 개괄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 핵심 기준 -

- 2024년 6월에 IPSASB는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IFRS 18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예비견해를 확정했으며, 재무상태표와 관련하여 IASB는 중요 개정사항 없이 IAS 1의 규정을 IFRS 18로 이관한 바 있음
- IED(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규정은 주로 IFRS 18에 근거한 것으로, IPSAS의 현행 규정과 실질적으로 일치함. 이는 IPSAS 10I 실질적으로 IAS 1과 정합성을 갖기 때문임. IPSAS 1의 공공부문 특유의 문단은 여전히 유용하고 목적적합한 경우 IED로 이관되었음

- 적용지침 -

- IED(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용지침(기준서의 권위 있는 부분을 구성)에는 상당한 양의 신규 지침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자산 및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법을 다루고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적용지침(안)의 대부분은 현재 IPSAS 1의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IPSAS 1은 비교적 오래된 기준서이기 때문에 적용지침 섹션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음. Staff는 이러한 IPSAS 1 문단을 적용지침 섹션으로 이동시키는 것(IFRS 18에 대한 조치와 같음)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이러한 접근법은 적용지침이 핵심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돋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IPSAS와 일관된 것임				
- IFRS 18과의 정합성 개괄 -				
• 다음 (표 2)는 IFRS 18의 문단이 IED(안)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줌 (표 2)				
9.2.6	IFRS 18 문단	IED 문단	IFRS 18과의 정합성 정도	
96~97	96~97	124~125	IFRS 18에 부합함	
	98	-	당해 IFRS 18의 문단은 IPSAS에 적용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의 표시를 다름	
	100~104	126~131	IFRS 18에 부합함	
	-	132	신규 IPSAS 문단은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비용에 따른 배열 규정을 언급하기 위한 것임	
	-	133	신규 IPSAS 문단은 IED에 나열된 특정 표시 항목은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열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임	
	105~106	134~135	IFRS 18에 부합함	
	-	136~138	이관된 IPSAS 1의 규정임	
적용지침 (AG)				
B90~B108 AG102~AG121 IFRS 18에 부합함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IPSAS 1 대비 변경사항 개괄 -		
• (표 3)은 상응하는 IPSAS 1 문단이 IED(안)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줌 (표 3)		
재무상태표의 표시		
IPSAS 1	IED 문단	IFRS 18과의 정합성 정도
유동/비유동 구별		
70~71	124~125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72~75	AG102~105	IP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유동자산		
76	126~127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7~79	AG106~AG108	IP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유동부채		
80	128~129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81~87C	AG109~AG121	IP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9.2.6	88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	신규 IPSAS 문단은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 비용에 따른 배열 규정을 언급하기 위한 것임
	-	신규 IPSAS 문단은 IED에 나열된 특정 표시 항목은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열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임
	89~90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91~92	IP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재무상태표 본문 또는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93	사용되지 않는 문단 - 상응하는 문단이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에서 제공됨
	-	새로운 IFRS 18 적용지침 문단
	94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95	IPAS 1에서 이관됨
	95A	당해 문단은 IPSAS 30, 금융상품: 공시로 이관됨(IFRS 18의 후속 개정사항에 부합함)
	96~97	IPAS 1에서 이관됨
	98	IP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 IED에 포함된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규정 및 적용지침의 개발안과 함께 Staff의 추가 분석 결과는 안건 9.3.2에서 제공하고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재무상태표 - 유동성 배열법	
[의결사항]	
유동성 배열법은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중 하나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권고사항]	
• Staff는 IPSAS 1 및 IFRS 18과 일치하도록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표시를 예외사항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배경]	
• 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자산 및 부채를 분류하는 규정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일관성 있는 표시 촉진을 위해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IPSAS의 일반 접근법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음	
•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IPSASB는 Staff에게 IPSAS에서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계속 규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더 검토하도록 요구함	
• IPSAS 1의 문단70은 재무상태표의 본문에서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하는 현행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IAS 1과 정합성을 가지며 개정 없이 IFRS 18로 이관된 바 있음	
9.2.7	
7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충실히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76~87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IPSAS 1과 IFRS 18은 모두 유동성 배열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이나 당해 예외사항을 적용하기에 적절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규정하지 않음	
• IPSAS에서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또는 부채가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언제 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는 자산의 예상 실현·소비 시점 또는 부채의 예상 결제 시점에 근거하는 유동/비유동 구별과는 다른 것임. 유동성 배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IPSAS 1과 IFRS 18은 모두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다루지 않음	
•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배열법이 재무상태표 본문에 자산 및 부채 표시 항목을 그들의 상대적인 유동성 순서(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얼마나 빠른 시기에 결제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간주되고 있음. 이러한 표시 방법을 따르는 경우 재무상태표는 추가적인 분류 없이 대개 '자산' 및 '부채' 소제목만 포함하게 됨	
•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 표시 항목의 예상되는 만기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는 IPSAS 1의 문단71에 따른 주석 공시 방법으로 요구되는 것임	
71.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보고일 후 12개월 이내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표 3 의 계속**■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재무상태표 - 유동성 배열법

- 많은 공공부문실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종종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그들의 자산이 PP&E와 같은 유형자산이기보다 상이한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이기 때문임. 이러한 실체의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로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이들을 유동/비유동으로 임의로 간주하여 분리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원이 만기에 맞게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
- 잉글랜드은행(영국의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유동성 배열법의 사례를 제공함

[분석]

- 9.2.7
- 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함
 - (a) 공공부문 내 특정 실체가 현재 사용중이며, 실무에서 보고된 쟁점이 발견되지 않음
 - (b) 규정을 유지할 때 IFRS 18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음(IFRS와의 차이를 정당화 할 만한 공공부문 특유의 근거가 식별되지 않았음)
 - (c) 적용 가능하다면 유동/비유동 접근법보다 충실히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
 - (d)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는 실체의 경우 (IPSAS 1에서 요구하는) 자산 및 부채의 예상 만기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
 -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유동성 배열법이 오직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IPSASB의 기대를 더 강조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BC X. IPSASB는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의 촉진을 위해 유동/비유동 분류를 IPSAS의 재무상태표 표시를 위한 일반 접근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PSASB는 또한 충실히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간주되는 경우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상황은 실체의 활동과 실체의 자산 및 부채의 성격,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의 적용에 근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 배열법은 금융기관과 같이 주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체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데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 Staff는 또한 IFRS 18의 문단B92가 실제로 하여금 자신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유동/비유동 분류 및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혼합 접근법으로 묘사됨)을 허용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Staff는 혼합 표시 접근법이 공공부문에 걸쳐 일관성 있는 재무상태표 표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표 3 의 계속

■ 안건 9: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IFRS 18	수정후 IED (안) (안건 9.3.2 참조)
9.2.7	B92. 문단124를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면 실제는 유동/비유동 분류법 및 유동성 순서에 따른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	AG104. 문단124를 적용할 때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사용하는 실제는 표시 항목들을 유동성 순서에 근거한 개별 분류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genda Item 9.2.7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Order of Liquidity Approach

Analysis

The recommendation to retain the Order of Liquidity Approach is based on:

- Alignment with IFRS 18
- Current use by specific public sector entities
- In some circumstances, it allows for more relevant and faithful information to be presented
- The requirement remains to disclose the current/non-current distinction in the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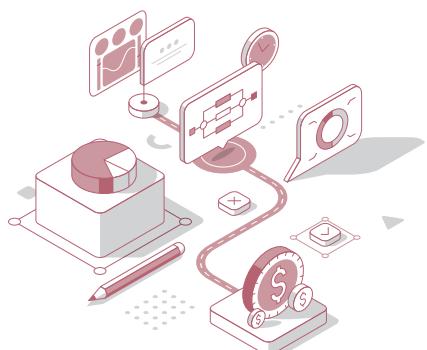
Recommendation

- Retain the exception to present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ased on the order liquidity approach
- Add a BC to emphasize that the approach is expected to be applied on an exception basis
- Amend the IFRS 18 paragraph, which allows for a mixed presentation approach



4) (2024년 9월~2025년) IPSASB 업무계획

프로젝트	2024		2025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기준 제정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ED		RR	RR/DI	RR/DI	IP
측정-적용 단계			RR/IP	IP		
천연자원	ED		RR	RR/IP	RR/IP	IP
천연자원-IFRS 6, IFRIC 20 대응	RR/IP	IP				
재무제표 표시	DI	DI/CP	DI/CP	CP		RR
IPSAS 33-제한된 범위 업데이트			RR/IP	IP		
IFRIC 대응-제한된 범위	RR/IP	IP				
연차개선과제(Improvements)			ED		DI/IP	
IPSAS31 무형자산-제한된 범위		DI	DI	DI/ED	ED	
중요성 판단 기준-제한된 범위		DI	DI	DI/ED	ED	
기타 프로젝트						
2024~2028년 업무계획	SWP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개발	RS	RS				
i) 일반 요구사항						
ii) 천연자원관련-비재무적 정보 공시						
IPSASB 핸드북	발간			발간		



02 IPSAS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발표

2024년 10월에 IPSASB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중 첫 번째 공개초안인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하였다. 2022 세계은행 보고서(*2022 World Bank Report*)에 따라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의 개발이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IPSASB는 2022년에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으며, 지난 2023년부터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기후 관련 공시’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IPSASB는 SRS ED 1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및 IFRS S2 등 민간부문의 국제적인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IPSASB는 SRS ED 1이 기후 관련 보고의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 SRS ED 1 표지 및 요약 안내자료

The image shows the cover and a summary page of the IPSASB SRS ED 1 document. The cover is a white page with a blue header bar containing the text 'Exposure Draft 1 October 2024 Comments due: February 28, 2025' and the IPSASB logo. Below the header, it says 'Propose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Climate-related Disclosures'. The summary page has a dark blue header bar with 'AT A GLANCE October 2024'.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IPSASB SRS ED 1 Summary – Climate-related Disclosures'. It includes sections for 'Project Objective', 'Project Stage', 'Next Steps', 'Comment Deadline', and 'How To Respond'. A note at the bottom states: 'This At a Glance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by staff of the IPSASB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ndards or other authoritative publications of the IPSASB. It has not been reviewed, approved or otherwise acted upon by the IPSA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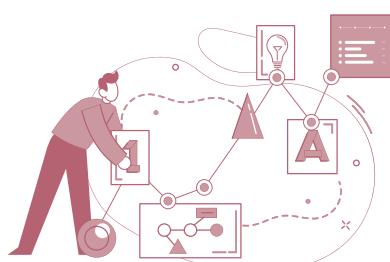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은 공공부문실체에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공공부문실체의 자체 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사항이다. 자연재해나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과 같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실체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공

시 의무는 정부, 학교, 병원 등 모든 수준의 공공부문실체에 적용된다. 두 번째 유형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대한 공시사항이다. 여기서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이란 기후 관련 결과의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부문실체의 고유 권한 행사를 통해 타 실체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 규제, 세금 및 보조금 등 모든 형태의 개입을 말한다. 따라서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공시 의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이 이러한 기후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실체에만 적용된다.

SRS ED 1의 내용과 관련하여, IPSASB는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을 통해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9개의 의견요청사항들은 주로 SRS ED 1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센터는 SRS ED 1의 적용이 예상되는 정책 담당 기관과 공공부문실체의 의견을 토대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할 예정이다.

IPSASB SRS ED 1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28일이며, 공개초안 및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ipsasb-srs-exposure-draft-1-climate-related-disclosures>



03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4년 3월에 발간된 영국 정부의 2021-22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이하 'WGA')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22*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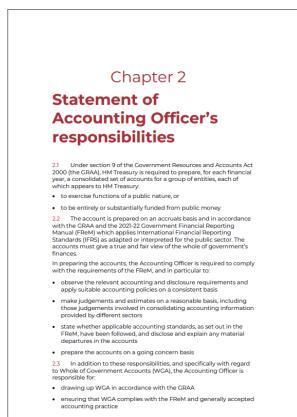
가. 결산서의 구성

WGA는 성과보고서(결산 요약 및 결산 개요 포함),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거버넌스 확인서(Governance Statement), 재무제표 및 주석, 감사원장 메시지, 부록인 국민계정과의 비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재정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4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결산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감사원장 성명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2년 3월 31일 현재 영국 정부의 총자산은 2조 4,143억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2,076억파운드(9.4%)가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6조 2,892억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7,562억파운드(13.7%)가 증가하였다. 2022년 영국정부의 순부채는 5,486억 파운드가 증가하여 2022년 3월 31일 현재 3조 8,749억파운드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소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유형자산, 기타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 미수금이다. 자산 중 55.5%가 유형자산이며, 그중 54.8%가 사회기반시설이다. 공공부문 사회기반시설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철도망이며, 그 가치는 3,655억파운드(2020~2021년: 3,368억파운드)에 달한다. 기타 자산에는 무형자산 437억파운드(2020~2021년: 410억파운드)가 포함된다. 무형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무형자산의 광범위한 정의에서는 지식, 기술 및 노하우를 포함하며 공공가치를 더 폭넓게 고려한다.

영국 정부는 정부차입, 공공부문 연금부채, 기타 금융부채,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와 같은 여러 주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타부채는 장기 및 단기부채로 구성된다. 단기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미지급금, 단기국채 및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등이다. 장기부채의 범위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2048년에 종료되는 민간 투자개발사업(PFI), 2096년으로 종료가 추정되는 연금보호기금 충당부채, 다양한 조건의 금융리스 부채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부가 군인을 위해 보유 중인 주택(173년 후에 계약종료)도 포함된다.

그림 1 영국의 자산 및 부채 구성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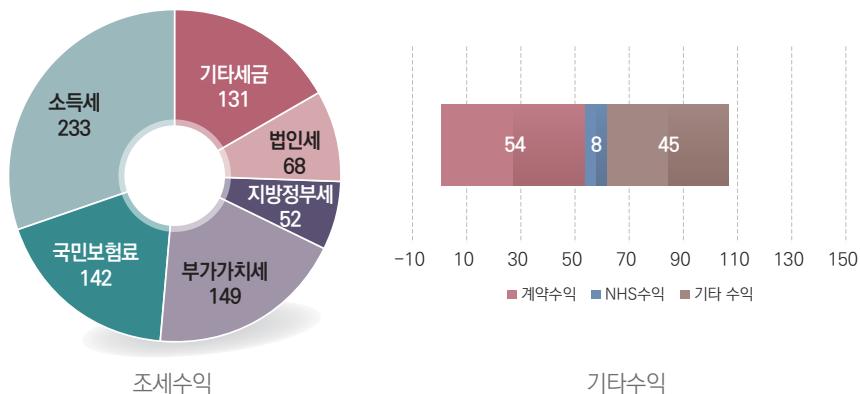
출처: 영국 재무부,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2*, 2024, [자산 내역], p. 56, 〈Figure Chart 1.K〉; [부채 내역] p.61, 〈Figure Chart 1.Q〉.

2) 수익 및 비용

2022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의 정부 수익은 8,816억파운드를 기록했다. 조세 수익이 총수익의 87.9%(7,747억파운드)를 차지하며, 이 중 93.0%는 영국 국세청 (HM Revenue and Customs)에서 징수한 것이다. 조세수익은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 세율,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에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특히 2020-21년에서 2021-22년으로의 납부 연기 조치가 조세수익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총 조세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은 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이며, 그 외에도 기타 다양한 세금 관세도 포함된다. 정부는 조세수익 외에도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기타 수익이 총수익의 12.1%(1,069억 파운드)를 차지하며, 기타 수익은 계약수익, 국민건강서비스(NHS) 수익 및 기타로 구성된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수익이 계약수익의 49.1%(266억파운드)를 차지하며, NHS 수익은 의료비 개인 부담 환자가 납부한 금액(5억파운드)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영국의 수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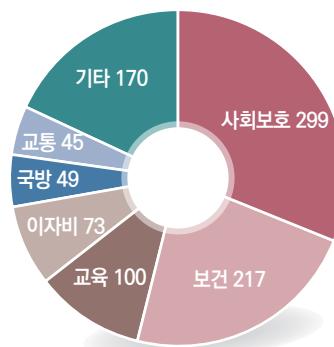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2*, 2024, p. 10.

비용(공공서비스 원가)은 총 1조 444억파운드로 집계되었다.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보장급여 2,597억파운드(2020-21년: 2,584억파운드), 인건비 2,845억파운드(2020-21년: 2,535억파운드) 및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2,562억파운드(2020-21년: 2,387억파운드)이다. 비용(공공서비스 원가)은 지난 5년간 29.1% 증가하였다. 2021-22년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이 762억파운드 감소한 1,210억파운드(2020-21년: 1,972억파운드)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일자리 유지제도(CJRS) 및 자영업자 소득 지원제도(SEISS) 관련 보조금의 지급액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3 영국의 주요 기능별 비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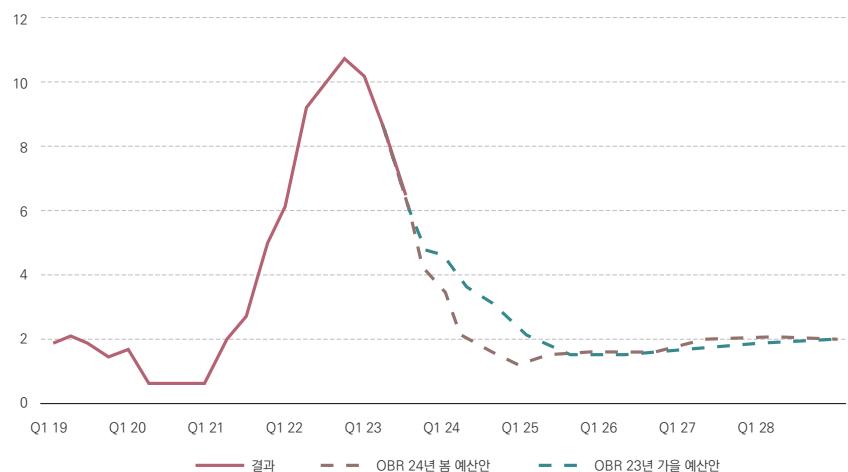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2*, 2024, p. 1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위원회(MPC)는 2021년 12월 0.1%에서 5.25%로 은행 금리(Bank Rate)를 인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11.1%(2022년 10월)에서 4.0%(2024년 1월))를 이끌었다. 인플레이션은 예산책임청(OBR)의 2023년 11월 전망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OBR은 2025-27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 및 전망

(단위: %)



출처: 영국 재무부,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2*, 2024, p. 27, 〈Figure Chart 1.C〉.



04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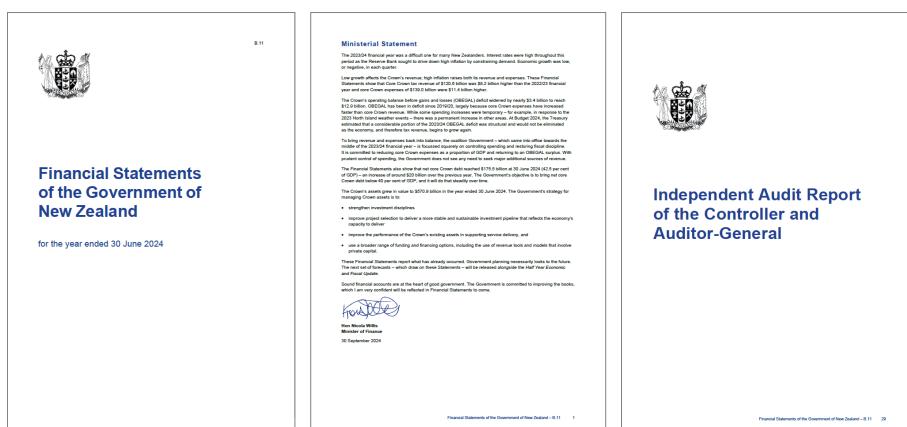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4년 10월에 발간된 뉴질랜드 정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year-end/financial-statements-2024>

가. 결산서의 구성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는 재무부 장관 메시지,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Responsibility),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감사관 등의 독립감사보고서, 뉴질랜드 정부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6종으로 재무성과표, 포괄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정상태표, 부문별 명세서를 제공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0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충설명(미감사)과 추가재무정보(미감사)를 결산보고서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독립감사보고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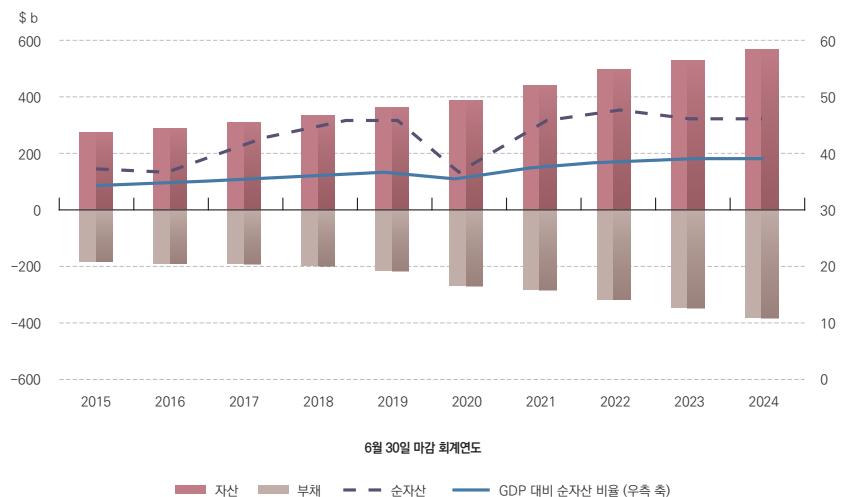
2024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자산은 5,709억뉴질랜드달러이며, 총부채는 3,798억뉴질랜드달러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순자산은 1,91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4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여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자산은 전년 대비 342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금융자산과 유형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2,57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65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중앙은행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97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이는 작년에는 보유자산이 정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자산 증가로 반영되지 않은 반면, 올해는 중앙은행이 정부 보고실체 외부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2,838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64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179억뉴질랜드달러의 유형자산 추가와 75억뉴질랜드달러의 순 재평가 변동에 따른 것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346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차입금과 보험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차입금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2,509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242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국채 관리 규모의 증가 및 정부 보고실체 외부에서 보유하는 국채의 증가로 인해 국채가 238억뉴질랜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유동성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유럽기업어음 110억 뉴질랜드달러 증가와 COVID-19 기간 동안 사용된 대안적 통화정책 도구가 축소되면서 결제예금이 124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된 결과이다. 보험부채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666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91억 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계리손익의 증가로 인한 ACC의 미지급보험금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그림 1 자산/부채 및 순자산

(단위: % GDP)



출처: 뉴질랜드 정부,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2024, p. 25, <Figur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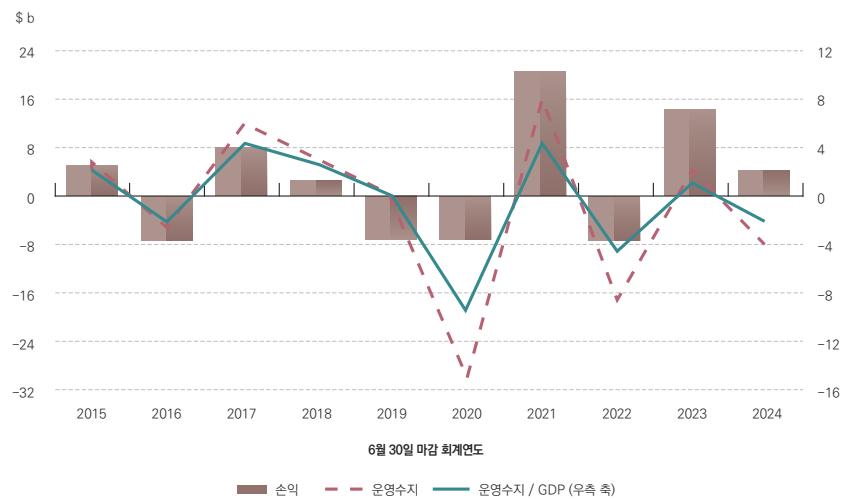
2) 수익 및 비용

2024회계연도의 차손익반영전운영수지(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이하 'OBEGAL')는 129억뉴질랜드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 대비 34억뉴질랜드달러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주요 원인이다. 공공기관은 60억뉴질랜드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중앙정부는 58억뉴질랜드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공공기관의 OBEGAL 적자는 ACC²⁾제도 하에서 보험 청구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ACC 보험비용은 주로 많은 장기보험금과 기대보다 낮은 재활 성과로 인한 주당 보험금원가의 상승 때문에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OBEGAL 적자는 중앙정부 지출 증가가 중앙정부 세수 증가를 초과한 데 기인한다.

2)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뉴질랜드의 국영 기관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보상과 재활 지원을 제공하는 무과실 사고 상해 보상 제도를 관리한다.

그림 2 운영수지

(단위: %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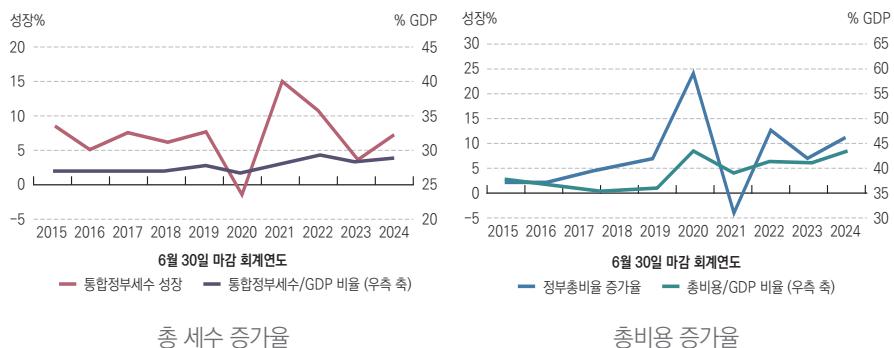


출처: 뉴질랜드 정부,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2024, p. 13, (Figure 3).

2024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수익은 1,673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43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세수익의 증가와 공기업(SOE)의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세수익은 1,199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82억뉴질랜드달러(7.3%)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익의 증가는 강력한 임금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그리고 연중 지속된 높은 금리로 인한 결과이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비용은 1,80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82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다. 증가분은 주로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114억뉴질랜드달러), 나머지 68억뉴질랜드달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하였다(내부거래 제거 포함).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의 인건비 증가와 물가 연동 조정으로 인한 주요 복지급여 유형의 지급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림 3 총 세수 및 총비용 증가율



출처: 뉴질랜드 정부,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2024, [총 세수 증가율], p. 9, 〈Figure 1〉; [총비용 증가율] p. 10, 〈Figure 2〉.

다. 파리협정과 뉴질랜드의 NDC 이행 및 회계처리

파리협정이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NDCs)로서,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기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감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빙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는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달성하려는 연속적인 NDC를 준비, 전달,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에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첫 번째 국가별 자발적 기여(NDC1)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계 목적상 정당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NDC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에 부채를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4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4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01 202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2024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12.5.),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센터〉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를 발간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는 국가결산 개설, 결산 보고서 작성양식, dBrain+를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27명의 중앙관서 결산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 및 2023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였고, 이를 통해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2024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제11차 재무결산실무 교육(10.17.),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2024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지난 6월 18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을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직접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의 이해,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가회계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996명(전년도 958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66), 강사 만족도는 4.70점(전년도 4.69), 교육 환경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76점(전년도 4.74)으로 교육 참여 인원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향상되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내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5년 5월 중순부터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2024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2024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11.29.), 소노벨 변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소노벨 변산에서 '2024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정석철 과장이 결산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한국재정정보원 전연미 차장이 dBrain+의 2024회계연도 결산절차 및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윤성호 팀장이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여섯 번째 해로, 충실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지원 등으로 높은 행사 만족도(4.8/5.0만점)를 달성하였다.

04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2차시(11.21.), 서울지방조달청〉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4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2개 도시(제주, 광주, 전북, 경기, 인천, 경남, 부산, 경북, 대구, 강원, 세종, 서울)에서 실시되었고, 총 3,615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통계 동향

/////////////

-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01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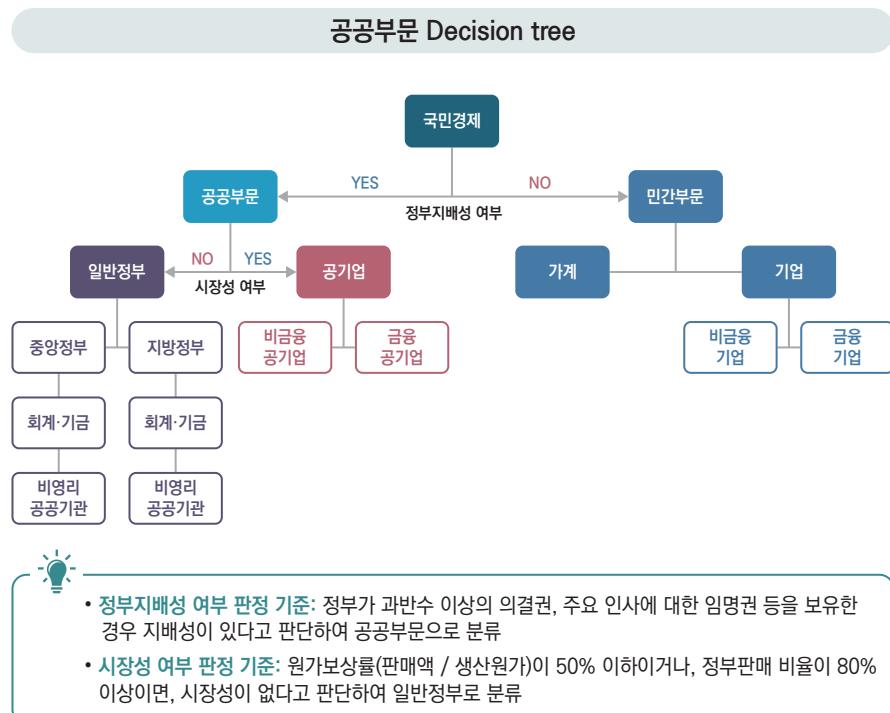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12일(목)에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부문 Decision tre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2024, p. 33, [그림 2-3].

2023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등을 포함하여 총 507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49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58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2023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3조원(GDP 대비 69.7%)으로 전년(1,588.7조원) 대비 84.6조원(GDP 대비 1.3%p)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D2)가 전년 대비 60.1조원(GDP 대비 0.9%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8.0조원(GDP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두 부문 간의 내부거래는 3.5조원(GDP 대비 0.0%p) 증가하였다.

표 1 공공부문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A)		2023(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공공부문 부채(=①+②+③)	1,588.7	68.4	1,673.3	69.7	84.6	1.3
○ 일반정부(①)	1,157.2	49.8	1,217.3	50.7	60.1	0.9
○ 비금융공기업(②)	517.4	22.3	545.4	22.7	28.0	0.4
- 중앙 비금융공기업	481.4	20.7	504.0	21.0	22.6	0.3
- 지방 비금융공기업	50.9	2.2	54.6	2.3	3.8	0.1
- 내부거래	△14.9	△0.6	△13.2	△0.6	1.7	0.1
○ 내부거래(③)	△85.9	△3.7	△89.5	△3.7	△3.5	△0.0

주: 이하 모든 표의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12. 12.(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이하 재정통계 동향 모든 표 동일)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가 63.4조원 증가하였고, 지방정부 부채는 2.0조원 감소하였으며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1.2조원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GDP 대비 50.7%)이고 GDP 대비로는 0.9%p 증가하였다.

표 2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1,157.2	49.8	1,217.3	50.7	60.1	0.9
○ 중앙정부(①)	1,104.2	47.5	1,167.6	48.6	63.4	1.1
- 회계·기금	1,064.6	45.8	1,128.3	47.0	63.7	1.2
- 비영리공공기관	55.0	2.4	59.0	2.5	4.0	0.1
- 내부거래	△15.4	△0.7	△19.7	△0.8	△4.3	△0.2
○ 지방정부(②)	72.8	3.1	70.7	2.9	△2.0	△0.2
- 지방회계·기금	70.6	3.0	67.5	2.8	△3.1	△0.2
· 지방자치단체	66.6	2.9	64.1	2.7	△2.5	△0.2
· 교육자치단체	4.0	0.2	3.4	0.1	△0.6	△0.0
-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3.5	0.2	4.3	0.2	0.8	0.0
- 내부거래	△1.3	△0.1	△1.0	△0.0	0.3	0.0
○ 내부거래(③)	△19.8	△0.9	△21.0	△0.9	△1.2	△0.0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12.12.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가) 중앙정부 부채

2023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1,104.2조원(GDP 대비 47.5%) 대비 63.4조원이 증가한 1,167.6조원(GDP 대비 48.6%)으로 산출되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중앙 회계·기금,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63.4조원 증가한 것은 주로 중앙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1) 중앙 회계·기금

2023회계연도의 중앙 회계·기금은 전년 1,064.6조원(GDP 대비 45.8%) 대비 63.7조원이 증가한 1,128.3조원(GDP 대비 47.0%)으로 산출되었으며, 채무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앙 회계·기금 채무상품 유형별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2023년 부채 구성 내용
합계	1,064.6	1,128.3	63.7	
▪ 채무증권	905.2	965.1	59.9	국채(1,076.3), 공채(23.1), 연기금 등 보유 국·공채(△134.4)
▪ 차입금	107.7	108.5	0.8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95.3), 민자사업 부채(9.6) 등
▪ 기타 미지급	51.7	54.7	3.0	미지급비용(19.6), 미지급금(7.5) 등

(채무증권) 채무증권이 59.9조원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국고채 58.6조원 증가, 자기 국·공채 0.7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표 4 중앙 회계·기금 채무증권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합계(=①+②+③)	905.1	965.0	59.9
◆ 국채(①)	1,018.6	1,076.3	57.7
▪ 국고채	924.7	983.3	58.6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8	11.4	△0.3
▪ 국민주택채권	82.2	81.6	△0.5
◆ 공채(②)	21.6	23.1	1.5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1.6	23.1	1.5
◆ 자기 국·공채(③)	△135.1	△134.4	0.7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3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4.

(차입금) 민자사업(BTL) 부채 0.8조원 증가로 인하여 차입금이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

(2)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2023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5.0조원(GDP 대비 2.4%) 대비 4.0조원이 증가한 59.0조원(GDP 대비 2.5%)으로 산출되었다. 4.0조원 증가는 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차입금 및 선수금 등 증가(1.4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차입금 등 증가(1.9조원), 서민금융진흥원 미지급금 등 증가(0.8조원)에 기인한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23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72.8조원(GDP 대비 3.1%) 대비 2.0조원이 감소한 70.7조원(GDP 대비 2.9%)으로 산출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 회계·기금,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둘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2.0조원이 감소한 것은 지방 회계·기금 3.1조원 감소,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0.8조원 증가와 내부거래 0.3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표 5 지방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72.8	3.1	70.7	2.9	△2.0	△0.2
▪ 회계·기금	70.6	3.0	67.5	2.8	△3.1	△0.2
· 지방자치단체	66.6	2.9	64.1	2.7	△2.5	△0.2
· 교육자치단체	4.0	0.2	3.4	0.1	△0.6	△0.0
▪ 비영리공공기관	3.5	0.2	4.3	0.2	0.8	0.0
▪ 내부거래	△1.3	△0.1	△1.0	△0.0	0.3	0.0

(1) 지방 회계·기금

2023회계연도의 지방 회계·기금은 전년 70.6조원(GDP 대비 3.0%) 대비 3.1조원이 감소한 67.5조원(GDP 대비 2.8%)으로 산출되었다. 지방 회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회계·기금의 부채가 전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2.5조원 감소 및 교육자치단체 0.6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전년 66.6조원 대비 2.5조원 감소한 64.1조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등의 축소로 감소하였고, 자치단체별 감소액이 큰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원), 인천(△0.6조원), 경남(△0.4조원) 등이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4.0조원 대비 0.6조원 감소한 3.4조원으로, 민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0.5조원 감소하였다.

(2)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3.5조원 대비 0.8조원 증가한 4.3조원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0.4조원), 부산교통공사(0.2조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517.4조원(GDP 대비 22.3%) 대비 28.0조원 증가한 545.4조원(GDP 대비 22.7%)으로 집계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전년 대비 28.0조원 증가한 것은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22.6조원 증가,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3.8조원 증가, 공기업 간 내부거래가 1.7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22.6조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하여 12.9조원 증가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8조원 증가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가 2.4조원 증가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차입금 증가 등으로 3.8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이 큰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3.3조원), 서울교통공사(0.4조원) 등이다.



라. 부채 유형별(D1, D2, D3) 추세 분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비율의 경우 D1, D2, D3 모두 2019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가폭*은 2020년에 최고치였고 그 뒤로 줄어들고 있으나, D3의 경우만 2022년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전년 대비 4.1%p로 증가폭이 커졌다. 2020년 GDP 대비 비율 증가폭이 최고치였던 원인은 D1, D2, D3의 증가규모가 2020년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후 그 증가폭이 2021년까지 이어졌으나 2021년의 GDP 성장률이 7.2%로 2020년의 성장률(0.8%) 대비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D1, D2, D3 모두 GDP 대비 비율이 1% 내외로 증감하여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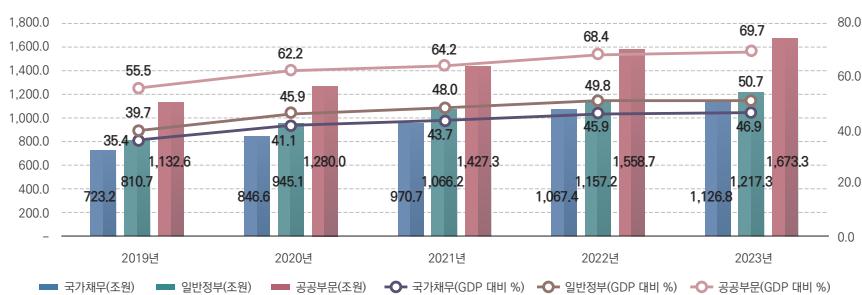
국가채무 (D1): (2020년) 5.7%p → (2021년) 2.6%p → (2022년) 2.2%p → (2023년) 1.0%p

일반정부부채(D2): (2020년) 6.2%p → (2021년) 2.1%p → (2022년) 1.8%p → (2023년) 0.9%p

공공부문부채(D3): (2020년) 6.7%p → (2021년) 2.1%p → (2022년) 4.1%p → (2023년) 1.3%p

그림 2 부채 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12. 12. 및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 2024.11.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회계
재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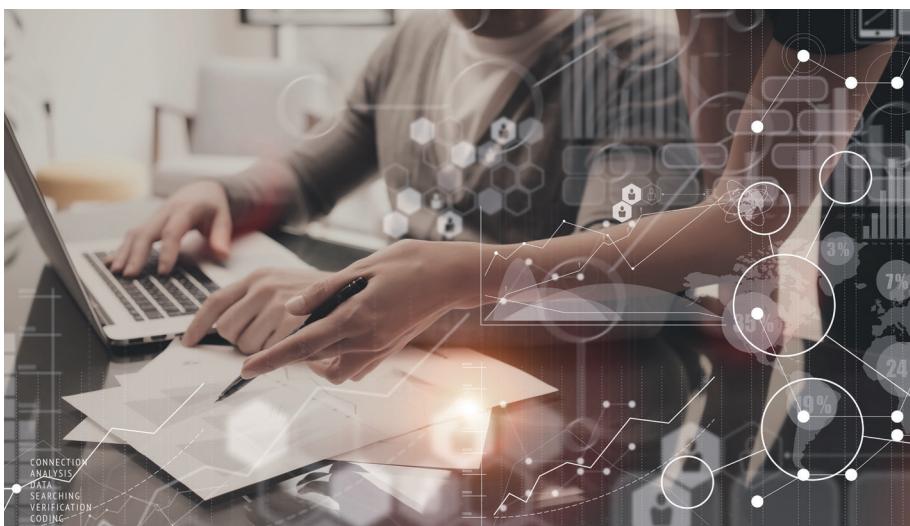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 2024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2024 XBRL Conference(2024 Data Amplified) 참석 결과
- 2024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

01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을 위탁 받아 202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교육은 2023년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 내용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 교육 강화, 수준별 기초 및 심화 교육의 구분' 요청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1일차에는 기초내용 교육, 2일차에는 이슈별 심화 교육, 3일차에는 작성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외부 강사풀을 확대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3회(글로벌센터, 은행회관), 세종 1회(컨벤션센터) 총 4회(9월~11월)에 걸쳐 8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진행하여 총 245명이 참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대상기관인 27개의 공기업, 46개의 준정부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였다. 또한 11개의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외 기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1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일정

(단위: 명)

차시	장소	일정		참석인원
		신청기간	교육기간	
1차	서울 (글로벌센터)	2024.9.2. ~ 2024.9.24.	2024.9.25. ~ 2024.9.27.	66
2차	서울 (글로벌센터)	2024.9.2. ~ 2024.10.15.	2024.10.16. ~ 2024.10.18.	69
3차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2024.9.2. ~ 2024.10.29.	2024.10.30. ~ 2024.11.1.	36
4차	서울 (은행회관)	2024.9.2. ~ 2024.11.12.	2024.11.13. ~ 2024.11.15.	74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공지사항-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신청 안내」, 2024. 9. 2., <https://pear.kipf.re.kr/pedu/>, 검색일자: 2024. 12. 13.

교육과정은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K-IFRS 계정과목 해설 중심의 기초내용 교육, 리스, 종업원급여 및 정부보조금 등 이슈별 심화교육, 연결재무제표, 법인세회계 및 현금흐름표 등 작성 실무 교육으로 구성하여 사흘간 21시간 운영하였다.

표 2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7.0H)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09:00~10:30	- 회계의 기초 및 재무제표의 종류 - 회계순환과정
	K-IFRS 계정과목해설 -유무형자산(기초)	10:30~12:00	- 유무형자산 측정, 감가상각, 손상
	K-IFRS 계정과목해설 -금융자산(기초)	13:00~14:30	- 금융자산 표시, 측정, 회계처리
	K-IFRS 계정과목해설 -부채&자본(기초)	14:30~16:00	- 채권발행 및 이자비용 인식, 상환 -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회계처리 - 자본의 세부 항목별 인식 및 측정
2일차 (7.0H)	K-IFRS 계정과목해설 -수익(기초)	16:00~17:00	- 수익인식모형 - 수익인식 회계처리
	리스(심화, 사례)	09:00~10:00	- 리스 회계처리 및 주요 오류사례
	종업원급여(심화, 사례)	10:00~11:00	-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심화	특수한 지분투자(심화, 사례)	11:00~12:00	- 특수한 지분투자 사례
	정부보조금	13:00~15:00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15:00~17:00	-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표 2 의 계속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3일차 (7.0H)	연결재무제표(작성실무)	09: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 지분법 회계처리와의 차이 - 연결 절차 실습 및 사례 -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법인세회계(작성실무)	10: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회계개요 - 법인세주석 작성 과정 실습 - 법인세 관련 주요 이슈 사례
	현금흐름표(작성실무)	13: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의 범위 및 현금흐름 구분 -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 주석공시의 비현금거래
작성 실무	결산서 작성방법(실무)	15:30~17:00	- 회계처리, 결산, 주석 작성 유의사항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공지사항-2024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2024. 7. 18., <https://pear.kipf.re.kr/pedu/>, 검색일자: 2024. 12. 13.

설문조사 결과, 작년보다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교육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설명이 유익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 실무 및 예시 위주의 교육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교육과정이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차후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4년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교육과정	4.46	4.56	4.56	4.50
교육환경	4.48	4.46	4.56	4.41
응답률	100%	96%	100%	100%

주: 5점 척도, 수료자(238명) 중 1차(65명), 2차(65명), 3차(36명), 4차(69명) 응답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회계 교육을 개발하여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결산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1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서울 글로벌센터)〉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서울 글로벌센터)〉



〈제3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세종 컨벤션센터)〉



〈제4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서울 은행회관)〉



02 2024 XBRL Conference (2024 Data Amplified) 참석 결과



2024 XBRL Conference(2024.11.18.), 스페인 마드리드

가. 출장 개요

목 적: 2024 XBRL Conference(Data Amplified) 참석

출장기간: 2024.11.18.(월) ~ 2024.11.23.(토)

출장지: 마드리드 스페인

나. 주요 내용

2024년 XBRL Conference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3일간의 컨퍼런스에는 규제 기관, 기준 위원회, 기술 전문가 및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컨퍼런스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규제 데이터 처리(Fast-Tracking Regulatory Data: Simplify, Maximise, Succeed)
- 인공지능 및 분석(AI & Analytics: Unleashing the Power of Structured Data)
- 지속가능성 전자 공시(Sustainability in Focus: Unlocking the Future of Digital Disclosures)
- 데이터 현대화 기술(The Tech Frontier: Modernizing Structured Data)

표 1 Conference 주요 내용(1일 차)

주요 내용	발제자
○ GLEIF의 10년 – 성공, 도전 과제 및 향후 과제	Alexandre Kech
○ GRI Standards의 디지털화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Cristina Gil White

1. GLEIF³⁾의 10년 – 성공, 도전 과제 및 향후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에서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및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법인 정보 식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LEIF를 설립하여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이하 'LEI')를 도입하였다. 법인식별기호는 기업의 '디지털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신원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GLEIF는 자동 검증 기능을 추가한 법인식별기호(vLEI)를 통해 금융거래에서 디지털 신뢰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의 디지털 신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식별기호(LEI)는 20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로 기업의 법적 신원을 ISO 17442 표준에 따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GLEIF는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비영리 재단으로서 LEI시스템의 운영 및 확장을 주도해 왔다. 지난 10년간 GLEIF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전 세계 270만개 이상 법인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 80% 이상의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법인식별기호(LEI) 사용
- 71개국 규제기관이 LEI시스템 채택

3)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 LEI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영리 스위스 재단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법인식별기호(LEI)는 신용평가, 거래 투명성 확보, 금융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ESG보고,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법인식별기호(LEI)가 활용되고 있다.

GLEIF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증가능한 법인식별기호(vLEI)를 도입할 계획이다. vLEI는 기존의 법인식별기호(LEI)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법인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vLEI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디지털 신뢰성 강화: vLEI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 법인의 신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비용 및 시간 절감: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법인의 신원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극대화 함
- 전자 서명 및 권한 관리: 기업의 임원 및 대표자가 인증한 vLEI를 통해 전자서명 실행 시, 해당 서명의 신뢰성 및 권한을 즉시 확인 가능함

GLEIF는 법인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vLEI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원 검증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켜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국의 규제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vLEI를 다양한 산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GRI⁴⁾ Standards⁵⁾의 디지털화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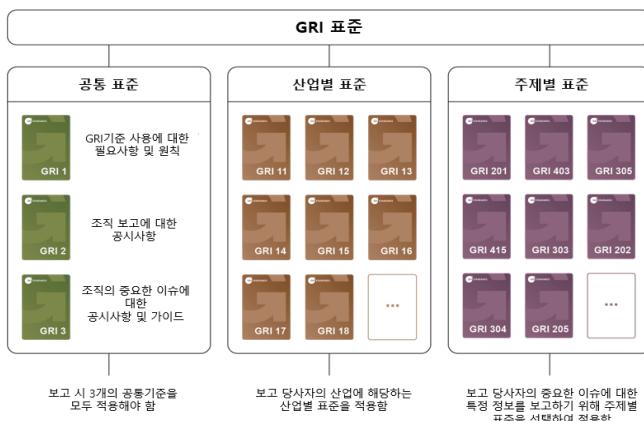
지속가능성 보고 기관인 GRI는 1997년 설립되어 기업 및 조직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RI Standards(이하 'GRI 기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중 하나로, 수많은 기업이 GRI 기준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해 왔다.

4)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정부기관

5) GRI Standards: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표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표준

GRI 기준은 공통 표준, 산업별 표준, 주제별 표준으로 구분된다. 공통표준은 GRI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RI1은 일반적인 보고원칙과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GRI2는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등 조직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GRI3은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분석 등 조직의 중요한 주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별 표준은 2021년 GRI 기준 개정 시 새로 도입된 기준이며, 지속가능성 보고 과정에서 산업 부문별 중대성 영향을 평가하고 석유 및 가스, 광업, 식품, 섬유 등 40개의 부문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표준은 특정 주제와 관련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표준을 담고 있으며, 경제(GRI200단위), 환경(GRI300단위), 사회(GRI400단위)별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림 1 GRI Standards 체계



출처: GRI, A Short Introduction to the GRI, p. 3 (Figure 1). GRI Standards: Universal, Sector and Topic Standards, 검색일자: 2024. 12. 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GRI는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인 PDF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개별 데이터 요소로 분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XBRL 형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XBRL기반 지속가능성 보고의 이점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수동 데이터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보고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화함
- 비교가능성 및 효율적 분석: 정보이용자 및 투자자들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편리하게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투명성 및 접근성 제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임

GRI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보고의 글로벌 표준으로서 기업의 투명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표준을 계속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⁶⁾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이하 'ISSB')⁷⁾와 협력하여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표 2 Conference 주요 내용(2일 차)

주요 내용	발제자
○ 운용 데이터 저장소(ODS)와 XBRL 수집 시스템	Martin DeVille
○ 금융 AI: 일반 모델 vs XBRL 기반 모델	Marc Houllier
○ XBRL 재무 공시 및 디지털 보고 시스템 업데이트	Gabje Kim(금감원)

3. 운용 데이터 저장소(ODS)⁸⁾와 XBRL 수집 시스템

본 세션에서는 XBRL 수집 시스템에서 운용 데이터 저장소(이하 'ODS')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ODS는 생성된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소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대규모 비교 및 고급 분석을 지원한다. ODS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관하기 전 데이터를 가공 및 검증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XBRL 데이터는 일반적인 거래 데이터와 달리 구조가 복잡하여 추가적인 검증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XBRL 데이터는 매년 택사노미가 업데이트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XBRL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와 변화하는 택사노미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적재 및 정제하는 과정에서 ODS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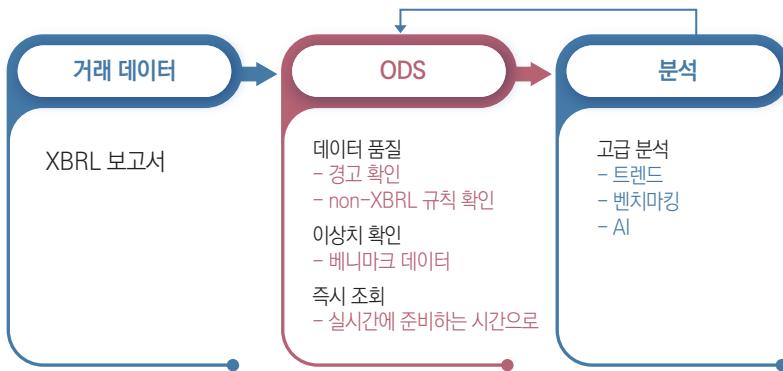
6)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EFRAG): 유럽연합(EU)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독립적인 기구

7)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ISSB): IFRS 산하 조직으로 기업 및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8) Operational Data Store(ODS):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이관하기 전에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임시로 운영하는 저장소

ODS에서는 XBRL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검증을 통해 이상치나 오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BI 도구에서 고급 분석을 진행하기 전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 ODS의 XBRL데이터 수집 과정



출처: Martin DeVille, What is the value of an Operational Data Store in an XBRL Collection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XBRL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최적화된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보고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품질 관리와 수집 및 분석속도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4. 금융 AI: 일반 모델 vs XBRL 기반 모델

최근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AI의 발전에 주목하면서 XBRL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일반 데이터 추출 모델과 XBRL 기반 데이터 추출 모델을 비교하여 두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금융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반 모델은 텍스트 및 PDF 데이터에 AI를 적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유로운 언어로 질문을 던져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속 회계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문해력 측면의 한계는 AI의 발전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XBRL 모델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XBRL은 회계 및 금융 데이터를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므로 데이터 분석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XBRL 모델은 사용자가 질문 시 XBRL 규격에 맞추어 질문을 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질의응답에 제약이 있다. 또한 데이터 입력 시 XBRL의 체계에 맞추어야 하므로 문서 준비과정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표 3 일반 모델 및 XBRL 모델 비교

	일반 모델	XBRL 모델
데이터 형식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PDF 등)	정형 데이터(XBRL 기반 표준 데이터)
데이터 추출 방식	자연어 통해 자유롭게 정보 추출	표준화된 태그 및 구조를 통해 데이터 추출
데이터 입력	자유로운 데이터 입력	XBRL 규격에 맞는 데이터 입력 및 태그 필요
정확성	회계 개념 및 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 가능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오류 처리	자연어 이해 오류나 데이터 추출 오류 발생 가능	XBRL 규격에 맞지 않은 데이터 입력 시 오류 발생

출처: Martin DeVille, What is the value of an Operational Data Store in an XBRL Collection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일반 모델과 XBRL 모델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XBRL 모델의 정확한 데이터와 일반 모델의 유연성을 결합하면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의 발전을 통해 XBRL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지만 현재는 XBRL이 금융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므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향후 금융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5. XBRL 재무 공시 및 디지털 보고 시스템 업데이트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정책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의 XBRL 재무공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비금융업 상장기업 재무제표 본문만 제한적으로 공시되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심층 분석이 어려웠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석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무제표 작성 난이도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XBRL 재무공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본문은 2007회계연도부터 비금융업 상장기업에 적용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3분기 보고서부터는 금융업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석의 경우 비금융업 상장기업은 2023회계연도부터, 금융업 상장기업은 202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비상장기업은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한해 XBRL 재무공시를 적용한다.

표 4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정책 요약

적용 범위	재무제표 본문	주석
상장 기업	비금융업	의무 적용 (2007년도 연차보고서)
	금융업	의무 적용 (2025년 반기보고서)
비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의무 적용 (2023년 3분기보고서)	

출처: 김갑제, An update on Korean XBRL financial disclosures and digital reporting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적용 기업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본문 및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모든 재무제표 본문은 XBRL 택사노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주석은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표준화된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

- Detail Tagging: 주석의 중요한 정보는 XBRL 텍사노미를 적용해 표의 행, 열 숫자 등에 속성값을 각각 부여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로 작성함
 - Block Tagging: 중요한 회계정책과 같은 일부 주석은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HTML형식을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함

그림 3 detail tagging 적용 주석 예시

DART		SAMSUNG ELECTRONICS CO., LTD.	
The contents provided in the 2009 <i>Annual Report</i> and <i>Financial Statements</i> are not audited and are subject to the company through the 2009, audit, and it may b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i>Annual Report</i> and <i>Financial Statements</i> to be audited.			
Equity			
1. <i>Amount Report</i>		Acquisitions and capital expenditures	54,914,342,000,000
2. <i>Capital and Financial Instruments</i>		Acquisitions through business combinations	75,180,000,000
3. <i>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i>		Dispositions	25,562,100,000,000
4. <i>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 and Accounting Policies</i>		Dividends	-278,180,000,000
5. <i>Financial Instruments by Category</i>		Dividends received	0
6. <i>Financial Instruments at Fair Value</i>		Dividends withheld as held for	-118,000,000,000
7. <i>Trade and Net Financial Assets</i>		Other	233,000,000,000
8. <i>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i>		Excess of (deficiency) in earnings	-106,250,000,000
9. <i>PROVISIONS, NET AND CONTINGENT LIABILITIES</i>		Land (continued)	
10. <i>Intangible Assets</i>		Dispositions of related intangible assets	0
11. <i>Deferred Income Tax Assets and Liabilities</i>		Acquisitions of intangible assets	0
12. <i>Deferred</i>		Dividends	0
13. <i>Other Assets</i>		Dividends withheld as held for	0
14. <i>Other Liabilities</i>		Other	16,954,171,000,000
15. <i>Capital and Contingent Liabilities</i>			9,000,197,000,000
16. <i>Reserves</i>			

그림 4 block tagging 적용 주석 예시

2. Statement of Complianc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re authorized for issuance by management on April 27, 2023.

Batched measurement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epared on the historical cost basis, except for the following material item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described in the accounting policy below:
(a) Derivatives instruments measured at fair value

3.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The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applied by the Company in the preparation of i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listed below. The accounting policies set out below have been applied consistently to all periods presented in the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xcept for the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disclosed in Note 2.

Basic of consolidation
(a) Business combinations
The Company accounts for business combinations using the acquisition method when the acquired set of activities and assets meets the criteria for a business.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set of activities and assets is a business, the Company assesses whether the set of assets and activities, considered together, are capable of being sold, transferred, or disposed of, in its entirety, for a substantially fixed price.

출처: 김갑제, An update on Korean XBRL financial disclosures and digital reporting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K-IFRS 택사노미는 국제표준 택사노미에 국내 산업 환경을 반영한 고유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개발되었고, 크게 재무 부문과 비재무 부문으로 나뉜다. 재무 부문은 XBRL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관리되며, 기업의 특성과 회계정책에 맞게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성된다. 비재무 부문은 XML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표준 데이터로 변환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각 행과 열에 속성값을 부여하여 표준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5 K-IFRS 택사노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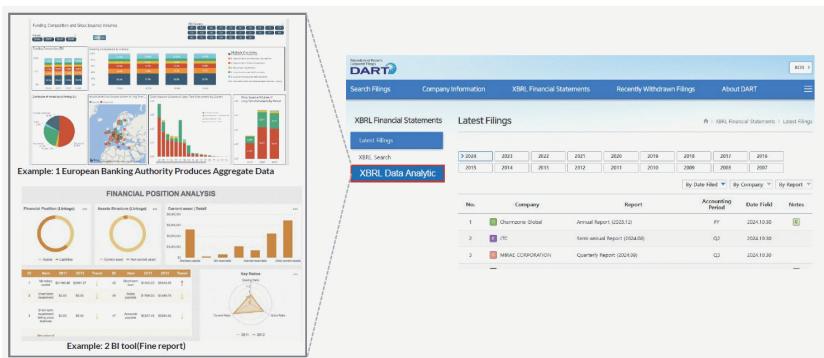


출처: 김갑제, An update on Korean XBRL financial disclosures and digital reporting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XBRL 공시 확대와 표준 데이터 도입을 통해 기업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오픈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적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의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K-GAAP에 기반한 택사노미를 개발하여 XBRL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ISSB의 ESG택사노미를 기반으로 한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는 한국 ESG택사노미 개발을 추진하고, ESG 공시의 신뢰성 및 글로벌 호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XBRL 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하여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보이용자들이 XBRL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6 XBRL 데이터 분석 툴 개발 예시



출처: 김갑제, An update on Korean XBRL financial disclosures and digital reporting system 발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5 Conference 주요 내용(3일 차)

주요 내용	발제자
○ ESRS 보고서와 ESRS XBRL 택사노미 데이터 모델	Szymon Geski
○ XBRL로 활성화된 ESRS 데이터의 선진 활용 사례	Marc Houllier

6. ESRS 보고서와 ESRS XBRL 택사노미 데이터 모델

최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가 강화되면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 데이터는 투자자, 기업 등 정보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연합에서는 ESRS1에 대한 XBRL 택사노미를 발표하였고,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디지털 태깅이 가능해졌다.

ESRS1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네 가지 범주(일반 정보,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ESRS XBRL 택사노미 모델을 활용할 경우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데이터 모델은 공시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여 보고할지 정보 구조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표 6 유럽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의 구성

공통표준	주제별 표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ESRS1 일반 요구사항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자체인력(임직원)	ESRS G1 비즈니스 행동
ESRS2 일반 공시사항	ESRS E2 환경오염	ESRS S2 가치사슬 내 임직원	
	ESR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출처: PWC,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https://pwc.to/3goLWkk>, 검색일자: 2024. 12. 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20개를 분석한 결과, 약 60%의 기업이 ESRS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정보의 제시 방식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ESRS는 기업이 직면한 영향, 리스크 및 기회(Impact, Risk and Opportunity, IRO)⁹⁾와 이에 대한 기업의 정책, 조치 및 목표 간의 연결을 요구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일관적으로 연결하지 못하였다.

ESRS XBRL 텍사노미 데이터 모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ESRS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텍사노미 데이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7. XBRL로 활성화된 ESRS 데이터의 선진 활용 사례

최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가 강화되면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데이터는 투자자, 기업 등 정보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준의 보고서 형태는 정보가 비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화

9) Impact, Risk and Opportunity(IRO):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

된 ESRS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포맷의 장점과 활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XBRL을 사용한 ESRS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환경 목표 달성을 현황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설정한 목표(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 에너지 비율 증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기준연도: 목표를 설정한 연도
- 목표연도: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 연도
- 현재 값: 목표와 관련된 현재 실적
- 목표 값: 달성을 해야 하는 목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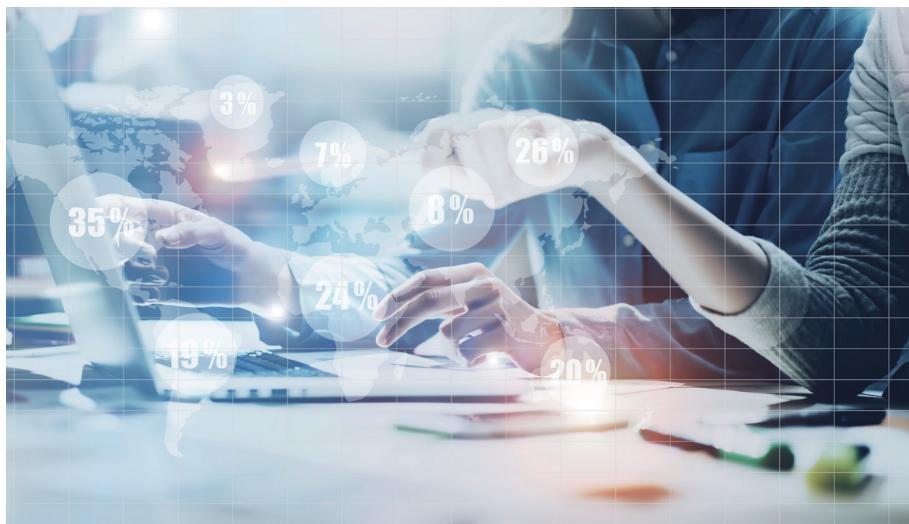
XBRL을 활용할 경우 위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기업의 목표 달성 현황 및 목표 달성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ESRS 보고서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PDF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테이블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했으나 XBRL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ESG 전환 계획과 관련된 목표를 비교할 수 있다. XBRL 데이터 활용 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기업의 전환 계획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고 기업 간 비교 및 계획 진행 현황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PDF 문서에서는 일관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웠으나, XBRL의 표준화된 포맷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XBRL 형식의 ESRS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 현황 파악, 재생에너지 비율 계산, ESG 전환계획 비교 등이 가능하므로 정보의 효율성, 정확성 및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관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보고 정보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03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6일 스페이스쉐어 서울 중부센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4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4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2개, 국가회계기준 적용 3개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의 결산업무 관련한 당부와 격려 말씀에 이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결산일정 변경 등 결산 이슈사항과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올해 PIFRS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홈페이지 및 결산서 편집기가 변경되어 시스템 개발업체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1 2024회계연도 회계 및 결산교육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30~13:55	◆ 교육자 등록 및 입실	
13:55~14:00	◆ 인사 말씀	출자관리과장
14:00~15:00 (1h)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 결산 이슈사항 회계처리 방안 ◆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주의사항	한소영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00~15:10	◆ 휴식	
15:10~16:40 (1h 30m)	◆ PIFRS 홈페이지 변경사항 및 사용방법 설명 ◆ 결산서 편집기 사용방법 설명	김남근 이사 (사용자신청, 결산서출력 등) 노지선 수석 (결산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6:40~17:00	◆ 질의 및 응답	

본 교육의 주요 내용이 수록된 교육 교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¹⁰⁾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교육(2024. 12. 6.,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1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Edu.do

0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회계담당자들에게 접근성을 개선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회계교육 동영상 주제 선정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설문조사(참여자 235명)를 기반으로 선정하였고, 설문 결과 정부보조금,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법인세회계, 리스에 대한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이론 교육과정을 우선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리스’와 ‘법인세회계’를 채택해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한 명지대 박경진 교수(리스), 경희대 최연식 교수(법인세회계)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본 교육 동영상은 12월 말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¹¹⁾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CyberEdu.do

05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2024. 10. 18.,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새로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기관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회계기준 개정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센터에서는 기관 주요 질의와 자체 조사한 사항, 공익법인회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가간담회는 2024년 10월 18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되었고, 외부 전문가로 최호윤 대표(회계법인 더함),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센터), 하정화 회계사(삼덕회계법인)가 참여하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박윤진 팀장, 최중갑 회계사, 최지영 회계사가 참석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사항으로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신설, 프로젝트별 비용 세분화, 분배비용 개념 검토 등이 논의되었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개정 사항으로 결산 적용에 보다 용이하도록 혼선을 주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예시를 추가하는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는 시설회계의 재무제표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논의하였다. 센터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을 보완하고 간담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세미나

/////////////////

- 「제5회 KIPF 발행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가. 개요

주 제: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일 시: 2024.11.7.(목) 14:00~17:00
 장 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프
로
그
램

[개회]

(개회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 사)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기조연설]

통합 재정 보고 원칙(Guohua Huang,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주제발표]

(발표1) 한국의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발표2)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통합(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
 (발표3)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남상우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

[종합토론]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패널: Dmitri Gourfinkel World Bank 선임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
 김태동 차 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oss Smith IPSASB 프로그램 및 실무 국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7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기구, 학계, 유관기관 및 회계·재정 전문가 등 총 195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저출생, 고령화, 소득 및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로 선정하여 10년 이상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마련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과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Guohua Huang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 및 축사 〉

기조연설에서는 Guohua Huang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통합 재정 보고 원칙’을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을 중심으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 작성 범위, 절차 및 GFSM 2014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의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한국 공공부문의 재무보고의 현황과 통합결산정보의 활용 사례 및 한국 도입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뒤이어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이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통합’을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통계 작성 범위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이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를 주제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Brain+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재정통계(GFS)의 작성 범위와 절차 등 통합 재정 보고 원칙, 한국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및 재정통계 현황, 통합결산서 활용 사례가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통합결산서를 도입할 때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신중히 검토하고, 한국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결산서의 범위와 방식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Dmitri Gourfinkel 세계은행 선임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와 김태동 차 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oss Smith 국제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프로그램 및 실무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공공부문 단위에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재정 및 거시경제적 측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재정 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재정 운영의 거시경제적 적합성 및 현재와 미래의 재정 운영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생산과 활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 통합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정보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 종합토론 〉

〈 회의장 〉

웹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pQJzfyV8lY8&t=1617s>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Z6G1WIl58po&t=799s>

나. 발표자료 주요 내용(요약)

[기조연설] 통합 재정 보고 원칙

발제자

Guohua Huang,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 주요 발표 내용¹²⁾

Guohua Huang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통합 재정 보고 원칙’을 주제로, 거시경제통계의 통합시스템의 일부분인 정부재정 통계(GFS)의 작성 범위와 통합 절차 및 2014 정부 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의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12) 발표자료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추가 내용은 원문 자료(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https://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2014/gfsfinal.pdf>)로 보완함.

● 발생주의 회계 개혁의 이점

발생주의 회계 개혁은 공공부문의 재정 분석과 재정 통계 작성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재정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발생주의 회계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 기관이 저량과 유량정보를 포함한 통합재정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통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현금 기반 정보보다 더 포괄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공 재정 관리와 재정 위험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 등 보다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정부재정통계의 개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GFS')는 거시경제통계의 통합 시스템의 일부로, 재정 분석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GFS는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효과를 시각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하여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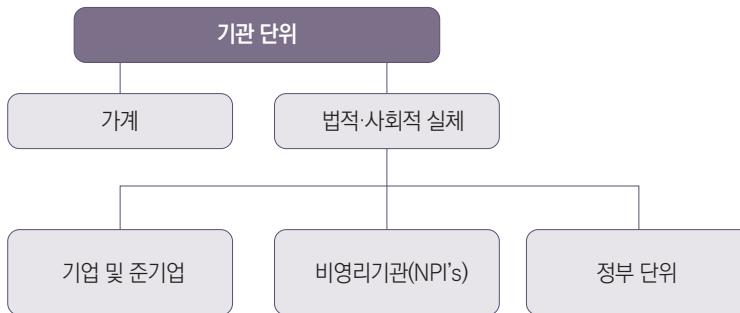
(1) 통합의 개념

통합은 기관 단위 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절차는 모든 저량과 유량 정보를 집계하고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중앙정부 등 부문 내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부문 간 집계를 포함한다. 통합의 본질은 재무회계와 GFS 간 유사하지만, 재무회계는 보고 실체가 지배하는 모든 실체가 통합 대상인 반면, GFS는 지배성(control)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하위 부문을 통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2) 기관 단위

GFS의 기관 단위란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와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의미하며, 크게 가계와 법적·사회적 실체로 구성된다. 법적·사회적 실체(Legal·social entities)는 소유주나 여타 실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위를 의미하며, 기업(준기업), 비영리기관, 정부로 구성된다.

그림 1 기관 단위



(3) 일반정부부문 및 공공부문 통합 범위

한 나라의 경제는 부문들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부문을 정의하고 부문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문이란 그들의 경제적 목적, 기능, 행위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기관단위들을 그룹화하는 것이며, 한 경제는 일반정부부문,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가계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등 상호 배타적인 다섯 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정부부문은 주요 활동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거주 기관단위로 구성된다. 비금융기업부문은 주로 시장 재화나 비금융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거주 기관단위로 구성되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포함한다. 반면 금융기업부문은 다른 기관 단위에 보험과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거주기업으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은 모든 거주 가계로 구성되고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은 정부 지배하에 있지 않은 시장 외적 거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되고,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GFS상의 공공부문은 거주 정부단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거주 기관단위들, 즉 일반정부부문과 거주 공기업의 모든 단위들로 구성되며, 시장 성의 여부에 따라 일반정부부문과 거주 공기업이 구분된다. 일반정부부문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모든 정부단위와 정부단위가 지배하는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되고, 공기업은 정부단위가 지배하는 기관 중 재화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단위로 시장성이 있는 기관이며,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된다.

표 1 경제의 상호 배타적인 5개 부문

구분	일반정부부문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분	가계부문	가계지원 비영리 기관부문
예산단위 (공공부문)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SSFs)	공기업	공기업	-	-
예산외적 단위	-	민간기업	민간기업	민간	민간

그 외 특정 공공부문 단위에는 가공자회사와 준기업 및 시장 사업체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공자회사(artificial subsidiary)는 자산과 부채를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설립하거나 통제하지만 실제 경제 활동은 거의 없고 자산과 부채만 관리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준기업은 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법인처럼 운영되는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부 산하 조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단위 내에 존재하는 시장 사업체(Market establishment)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소속 사업체를 의미한다.

정부 단위나 다른 공기업의 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통제 지표에는 여덟 가지가 있으며,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이사회 혹은 기타 관리기구 통제, 핵심 인사의 임명 혹은 해임 통제, 핵심 위원회 통제, 황금주 및 옵션 보유, 규제 및 통제, 공공부문 구매자 혹은 공공부문 구매자 그룹 통제, 정부 대출로 인한 통제 등으로 들 수 있다.

GFS의 작성 범위는 일반정부부문이며,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는 일반정부부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이와 같이 일반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통계만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다.

● 정부재정통계 작성 절차

정부재정통계(GFS)는 원천 자료 수집, 자료 조정 및 자료 통합의 세 단계의 절차로 작성된다. 먼저 원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다차원표준계정과목체계(SCoA)와 통합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료 작성과 통합이 보다 용이하다. 표준계정과목체계는 예산, 회계, 통계 보고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고, 모든 재정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등의 표준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표준계정과목체계 내에서 거래상대방을 식별할 때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이전) 등과 같이 계정 구조에서 거래상대방

정보를 명시하거나, 행정적 분류를 사용하여 회계 시스템 내에서 거래상대방을 식별한다. 그러나 자체 계정을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거래상대방을 식별해야 한다. 원천자료로 제출된 재무제표는 통합 과정에서 GFS와 연계되며, 재무제표가 표준화된 세부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자료 조정 단계에서는 회계 정책, 보고 기간 및 기준, 방법론적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조정은 집계 완료 후에 적용되며, 작성 과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 이후 자료 통합 절차가 진행되며, 통합은 완전한 과정이 아니므로 주요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 항목에는 보조금(이전), 이자, 대출, 채무증권, 기타 미수금(미지급금), 세금, 채권, 재화·서비스 구입 및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통합을 위한 요령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재정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이자, 대출 등의 주요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정보가 더 정확하다. 또한 기관 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위 정부의 정보가 하위 정부의 정보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통합은 대칭적인 과정으로 집계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수지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정 수지 등 핵심 항목을 활용해 정부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비통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재정보고 개선 노력 및 GFSM 2014 개정 작업

회계 개혁과 통계 지침의 개념 일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SNA) 발표를 계기로, 2001년에는 IMF가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2001)을 발표했으며, 2003년 10월에는 공공부문 회계 조화를 위한 작업반¹³⁾이 설립되었다. 이후 SNA와 GFSM 간의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하여 2008 SNA와 GFSM 2014가 발표되었으며, GFSM 2014 부속서(6)를 추가하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과 통계 지침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13) Task Force on Harmonization of Public Sector Accounting(TFHPSA)

GFSM 2014의 개정 작업은 SNA,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지침(BPM) 등 다른 통계 매뉴얼에 부합하고, 추가 지침 제공과 명확성 강화를 통해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정 작업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3분기까지 최종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2025년 1분기까지 신규 매뉴얼의 구조를 확정한 뒤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논의안을 작성하고 제언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배포를 위한 신규 매뉴얼의 최종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IMF는 개정과 관련된 신규 연구 과제로 GFS 작성 이슈, 채무 및 금융 관련 주제, 환경 관련 주제, 분석 및 의사소통 등 네 가지 연구 주제를 선정했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관들의 협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표 2 GFSM 2014 개정 관련 신규 연구 과제 초안¹⁾

GFS 작성 이슈	채무 및 금융 관련 주제	환경 관련 주제	분석 및 의사소통
2.1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의 범위	2.2 정부와 금융 공기업 간 범위	2.18 인프라 자산의 기록 및 평가	2.24 GFS 메타데이터의 표시 체계
2.3 토착 정부 회계처리	2.4 국부펀드(SWFs)의 거래 처리	2.19 천연자원의 회계처리 와 GFS에서의 활용	2.25 GFS와 사용자 간 의사소통
2.5 zakat ²⁾ 의 회계처리	2.8 채무 평가 이슈	2.20 기후 유지·유해 보조금 과 기타 이전	2.27 GFS와 IPSAS 간의 관계
2.6 예산외 단위의 정의 및 하위분류	2.9 채무 인수 및 타인 대신 채무 상환	2.26 천연자원 관련 GFS 유량의 표시	2.28 조세지출, 과세이연 및 기타 유사 인센티브
2.7 정부 혹은 공공 비생명보험 제도	2.10 대출의 평가 및 인식		2.29 공기업의 이익 잉여금 및 재정 분석에 미치는 영향
2.14 민관 파트너십 (PPPs)의 처리	2.11 총당부채와 우발 부채의 기록		2.30 공기업 데이터 작성 및 분석 관련 방법론적 지침
2.17 자본이전과 경상이전 간의 범위	2.12 IMF 및 기타 지역·국제기구의 저량 및 관련 유량		2.31 재정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GFS 활용
2.21 사회보장제도	2.13 공기업의 자본		2.32 대차대조표 분석
2.22 정부의 연금 채무 인수	2.15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의 회계처리		
2.23 종업원 복리후생 - 확정급여제도	2.16 민영화의 회계처리		

주: 1) 신규 연구과제 초안은 현재 논의 중임

2) zakat는 이슬람 신앙에 따른 의무적인 기부로 단순한 기부와는 상이함

[주제발표 1] 한국의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

발제자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 주요 발표 내용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공공부문 재무보고 현황과 통합결산정보의 이점, 주요국의 통합결산정보 작성 사례 및 한국 도입에 대한 합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의 공공부문의 통합재정정보 현황

한국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은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하며, 공기업은 K-IFRS를 적용한다. 이러한 부문별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한국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 수치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공공부문부채통계 (PSDS) 기준으로 본 공공부문 부채(D3)는 2020년에 GDP의 65%에 달하는 반면, 같은 해 중앙·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상태표 부채를 수작업으로 합산한 결과는 GDP의 100%에 달한다. 이 차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재정 재정상태표 순자산을 수작업으로 합산한 결과 1,918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같은 해 GFS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3,024조원으로 약 1,000조원 이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4,374조원으로 나타나, 적용 기준에 따라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고실체별 미시회계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전반의 거시회계정보 분석

정부 회계는 크게 재무보고, 통계 회계, 정부 예산 편성, 재정 지속가능성 예측의 네 가지 분야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재무보고는 회계책임성과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보고 실체를 중심으로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회계는 재무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거시경제 데이터를 추정하여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를 대칭적으로 처리해 계정 간 균형을 유지한다. 정부 예산 편성은 공공지출에 대한 입법적 승인의 근거를 제공하며, 기관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예측은 중기(5년)에서 장기(45~50년)의 경제 전망을 통해 재정 격차를 추정하고, 미래의 부채와 수익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무회계와 통계 회계의 연계를 통한 통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통합의 경제적 실체는 회계 책임성을 위한 법적·보고 실체와 정보 이용자를 의미하며, 정부가 통제하는 다수의 공공부문 단위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된다. 통합의 가장 큰 이점은 공공재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또는 그룹별 정부 단위의 재정상태표는 단편적인 자원과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 실체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이중 계산된 공공자원은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통합재정정보는 정부 전반의 포괄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들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공재정의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통합재정정보는 재무정보를 중앙화하여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감독을 강화하며, 정부 부문의 비효율적인 영역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정부 전반의 공공자원 정보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결산정보는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재정상태표를 의미한다. 미시회계 정보는 세부적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제공하는 반면, 거시회계 정보는 다양한 정부 단위의 재무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공부문의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즉 개별 정부 단위의 재정상태표를 통합해 정부 전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부 재정에 대한 공공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여러 정부 단위가 상이한 회계 기준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 기준 간 차이를 조정하고, 회계 정책 및 관행의 개념의 일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통합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적 역량이 요구된다.

● 주요국의 통합결산정보 및 한국 도입의 시사점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다섯 개 주요 국가의 통합결산정보 도입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통합결산서 도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발생주의 회계 도입 초기부터 통합결산정보(Whole-of-Government Accounts, WGA) 도입을 검토해 왔다. 1998년 재정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재정법(Finance Act)이 도입되었으며, 정부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 원칙도 제정되었다.

1980~1990년대 공기업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으로 인해 정부 순자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재정 상태의 지속가능성 논의가 대두되면서, 골든룰(Golden Rule)과 지속 가능 부채 비율 유지라는 재정규칙이 도입되었다. 골든룰은 공공투자를 위해서만 차입을 허용하고 경상지출을 위해 차입하지 않는 원칙으로, 재정지출을 투자와 경상 지출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부채 비율은 정부 부채를 GDP의 42% 이하로 유지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2000년 제정된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은 재무부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통합결산정보 작성을 의무화했다. 통합결산정보의 주요 목적은 미시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적 회계 수치를 산출하여 재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증진하여 공공재정의 전반적 재무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의 부산물로서 공공부문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2) 뉴질랜드

1984년, 국가부채가 GDP의 40%에 육박하고 환율이 20% 정도 평가 절하되는 등의 재정·금융 위기를 계기로 포괄적인 경제 개혁과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제도가 마련되었다. 1989년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기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1991년 세계 최초로 발생주의 기반 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2003년, 전 정부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도입하여, 통합재무제표의 범위를 GFS 기준과 일치하도록 확대해 중앙정부,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 등을 포함했다.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지방 정부를 법적·재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여 통합결산서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GFS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해 거시적 재정 통계를 제공한다.

(3) 호주

호주는 연방, 주, 준주(Territory) 정부가 자율적인 재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며, 각기 다른 형태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방정부 수준에서만 통합결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통합결산정보는 일반정부, 공공기관(금융·비금융), 내부거래 제거 계정을 별도로 구분해 작성한다.

(4) 캐나다

캐나다는 2011~2012회계연도에 최초로 정부 전반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다만 공공부문 전체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발간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5) 스웨덴

스웨덴은 1990~1994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과 통제 강화를 목표로 재정 관리 개혁을 추진했다. 주요 개혁 사항으로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중기 재정 계획, 성과 기반 예산제도 등이 있다. 1993년 중앙정부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면서 같은 해 중앙정부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유사하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통합결산정보는 각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통합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민간부문의 회계제도(GAAP)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상대적으로 통합결산서 도입이 용이했다. 단 통합의 범위는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전체이나, 뉴질랜드는 단일국가로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정부 소유 기관 및 국영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규모를 갖는 뉴질랜드만이 통합결산서를 공공부문의 재정관리(PFM)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와 캐나다 및 스웨덴의 통합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며,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별도로 작성하며, 스웨덴은 중앙정부 수준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국의 통합결산정보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통합결산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를 신중히 검토하고, 한국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통합결산서의 범위와 통합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제발표 2]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통합

발제자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

» 주요 발표 내용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은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통합'을 주제로, 한국의 지방 공공기관의 포함 범위, 지방정부 부문의 통계 및 통합 절차,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한국의 지방 공공기관의 포함 범위

한국의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는 17개의 상위자치단체와 226개의 하위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공기업은 72개의 지방공사와 88개의 지방공단으로, 출자출연기관은 94개의 출자기관과 743개의 출연기관으로 구성된다.

● 한국의 지방 공공부문의 통계

한국의 지방 공공부문 통계는 정부재정통계와 재정분석의 목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재정통계 목적으로 2012회계연도부터 작성된 '01 GFS와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작성된 지역통합재정통계와 통합부채가 있다. 이 두 가지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재정계획 문서에 포함되어 공시된다.

각 통계별 작성 범위와 포함되는 정보는 다르다. 먼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이며,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정보를 포함한다. '01 GFS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이며,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금흐름 정보를 포함한다. PSDS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이며 재정상태 정보만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부채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이며 재정상태와 우발부채 정보를 포함한다.

표 3 지방 공공부문 통계별 포함하는 정보

통계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금흐름	우발부채
'01 GFS	○	○	○	-
PSDS	○	-	-	-
지역통합재정통계	○	○	-	-
통합 부채	○	-	-	○

각 통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통합된다. 통계별 작성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재정통계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01GFS와 PSDS는 기관별 통계를 작성한 후에 상위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전체 수준에서 통합 절차를 거친다. 반면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기관별 통계를 작성한 후, 하위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를 먼저 통합하고, 이를 상위 자치단체 수준으로 통합한 후에 지방정부 전체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합부채는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자료에 우발부채를 추가하여 작성된다.

● 통계 작성 절차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지방 공공부문의 통계 작성과 관련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출자출연기관 범위의 일원화이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그 수가 많고 법적 정의¹⁴⁾가 경제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GFS와 상이하여 GFS와 PSDS 통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계 작성 시 기관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통계 보고의 통합이다. 지역통합재정통계와 통합부채 및 PSDS를 하나의 단일 통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합재정통계에 우발부채를 포함하면 별도의 통합부채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PSDS 간 부채 개념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수지 결산 정보를 병행 작성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아 GFS의 현금 원천 및 사용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e호조+ 시스템의 개선이다. e호조+ 시스템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사용자의 입력에 의존하므로 오류 식별 기능과 데이터 자동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금흐름표 작성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의 활용도를 증진해야 한다.

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의미한다(클린아이,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Guide.do>, 검색일자: 2024. 12. 9.).

[주제발표 3]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

발제자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

» 주요 발표 내용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은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를 주제로, 한국 재정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Brain+ 시스템 소개, 시스템 개선사항, 발생주의 회계 제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dBrain+ 시스템 소개

dBrain+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개년 중기재정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결산 및 성과평가까지의 정부의 재정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기관 간 재정정보 연계, 재정정보 분석 및 재정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dBrain+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정부재정통계 산출과 결산보고서 작성이며, 현금 기반의 예산 결산과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 결산은 복잡한 회계 처리를 간소화하는 결산 모듈을 통해 분개, 마감, 조정, 내부 거래 제거, 원가계산 등을 자동화하여 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한국은 1998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발표하고, 2003년 「국가회계법」 제정과 2009년 「국가회계기준」 마련을 통해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1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공식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2011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했다. 2009년 이후 국가회계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2025회계연도부터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재정 투명성과 정보 정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dBrain 시스템의 개선사항

dBrain 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 업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왔다. 먼저 데이터 일관성 점검 기능을 도입하여 결산 데이터 간 불일치를 점검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기능 검증 기능을 통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결산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통합재정수지 보고서를 통해 결산 결과를 공개하며, 오픈 재정 데이터 포털을 통해 GFS, PSDS와 같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발행주의 회계 제도의 주요 성과

발행주의 회계제도는 제도적 측면과 dBrain 시스템의 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발행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풍부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여 중장기 재정지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금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항목을 인식하여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유자산, 물품, 채권, 인프라 등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부채 수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했다. 국가재정통계의 작성 범위도 일반정부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 통계(GFS, PSDS)를 작성하여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책프로그램의 원가 정보 산출을 통해 성과 기반 재정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dBrain 시스템의 사용자 측면을 살펴보면,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발행주의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회계 담당자의 결산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했다. 또한 결산 기간 동안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회계결산 교육과 매뉴얼 제공을 통해 실무자들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지방 조직의 회계 시스템과 정책 변경을 유연하게 반영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 조직의 다양한 회계 처리와 정책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발생주의 회계 제도의 향후 과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향후 과제는 발생주의 기반의 국가회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국가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결산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개선된 발생주의 회계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토론]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Dmitri Gourfinkel, 세계은행 선임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

● 공공부문 단위의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열 가지 단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부문 단위의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은 위한 열 가지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통합재정정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즉 작성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회계 계정과목과 통계 체계의 개념일치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계정과목(CoA)를 마련한다. 뒤이어 3단계에서는 기관 간 동일한 회계 정책을 적용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4단계에서는 회계연도의 마감 및 보고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음으로 5단계에서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IFMS)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재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기반을 구축한 후, 6단계에서는 각 보고실체들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필요한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7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인 후, 8단계에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등 주요 항목의 통합과 집계를 수행하고, 내부 거래 제거 등 통합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이후 9단계에서는 산출 결과 검증을 통해 통합재정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마지막 10단계에서 공공부문, 일반정부 및 그 하위부문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김태동, 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 필요

발생주의 도입은 재정 관리의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발생주의 정보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계정보의 중요성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도 확인되듯이, 재정과 회계정보의 통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재정 운영의 거시경제적 적합성, 현재와 미래의 재정 운영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 재정과 거시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결산 과정에서 발생주의 재정정보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수립자와 집행자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와 재정통계를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고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통합재정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시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 증진을 위해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생산 및 활용 사이의 정보 격차 해소 노력 필요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관점의 차이로 인해 회계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회계정보의 공급자인 회계 관련자와 수요자인 재정·경제 관련자 간에는 정보의 접근 방식과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공급자는 정보 활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생산 과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사용 및 활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회계정보의 통합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통합재정 및 회계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산출 단계에서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정보 통합으로 인한 개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 내 자료 생산 주체가 다를 경우 분석 결과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정보 구축과 활용 시 결과의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자료 산출뿐만 아니라 정부 내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른 데이터 간의 분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프로그램 및 실무 국장

●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IPSAS 35(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내용 소개

IPSAS 35는 공공부문 회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관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지배(control) 기준을 기반으로 기타 보고실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IPSAS 35에 따르면 경제실체는 지배하는 모든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보고해야 하고, 경제실체 내 여러 보고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통합은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과 같은 주요 항목의 결합과 종속기관에 대한 투자 제거, 경제실체 내 기관들 간 잔액 및 거래 제거 등의 조정 절차로 구성된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IPSAS 35를 참조하여 통합결산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영국은 이를 활용해 대출 이자 및 우발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무정보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면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어 통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IPSASB 연례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재무정보 통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별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
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561 Fax 044.414.2570

